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의안 번호	1467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 12.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2024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3.11. 1)를 통하여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도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바, ①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②안전한 서울(2조 1,376억원), ③매력적인 서울(1조 272억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도됨
- 서울시의 '24년도 예산안은 45조 7,230억원으로 중복계상 되는 회계간 전·출입(4조 5,104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2,125억원이며,
 - 순계예산중 자치구 지원(6조 4,888억 2,500만원), 교육청 지원(3조 8,433억 600만원), 채무상환(1조 1,888억 8,200만원), 기금전출금(3,199억 900만원), 반환금(1,029억 6,700만원)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9,029억 9,800만원임
 - 실집행규모중 ①사회복지분야는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23년도 본예산(15조 9,506억원)보다 2.5%(4,025억원) 증가한 16조 3,531억원, ②도로·교통분야는 '23년도 본예산(2조 6,073억원)보다 △12.8%(△3,088억원) 감소한 2조 2,98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③공원환경 분야는 '23년도 본예산(2조 2,373억원)보다 △1.3%, △284억원 감소한 2조 2,089억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④도시안전 분야는 '23년도 본예산(1조 7,970억원)보다 △3.7%, △669억 감소한 1조 7,30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4년도 예산안은 45조 7,23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9.1%, △4조 6,041억 2,8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이다. '23년도 본예산(47조 2,052억 2,700만원)과 비교하면 △3.1% 1조 4,821억 9,2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6,347억 4,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운용계획(6조 5,300억 1,400만원)보다 △29.0%, △1조 8,952억 7,300만원 감액계획 하여 제출한 것임

〈표 1-1〉 2024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	산	45,723,035	50,327,163	△4,604,128				△9.1
	일반회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특별회계	12,667,607	14,139,119	△1,471,512				△10.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안)」 p.13

구	분	2024년도 (계획안)	2023년도 (최종계획)	증	감	증	감	률
기 (19개 기금 28개 계정)	금	4,634,741	6,530,014	△1,895,273				△29.0%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6

3. 예산안 개요

(1)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조 7,230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33조 554억 2,700만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2조 6,676억 7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2〉 2024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계		45,723,035	50,327,163	△4,604,128	△9.1
일반회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특별회계		12,667,607	14,139,119	△1,471,512	△10.4
	공기업특별회계	1,821,823	1,843,749	△21,926	△1.2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	930,000	40,000	4.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1,823	913,749	△61,926	△6.8
	기타특별회계	10,845,783	12,295,369	△1,449,585	△11.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49,037	2,019,844	29,192	1.4
	교통사업특별회계	1,523,235	2,159,438	△636,202	△29.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3,450	318,775	△95,324	△29.9
	주택사업특별회계	2,230,140	2,997,731	△767,591	△25.6
	도시개발특별회계	1,677,917	1,650,199	27,718	1.7
	균형발전특별회계	178,751	169,778	8,972	5.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658	36,771	△28,113	△7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5,163	1,928,934	△13,771	△0.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458	36,612	△4,153	△11.3
	소방특별회계	1,006,971	977,282	29,689	3.0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조 554억 2,7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36조 1,880억 4,400만원)보다 △8.7%, △3조 1,326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4조 2,352억 7,4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24조 1,121억 8,400만원)보다 0.5%, 1,230억 9,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1조 4,139억 9,1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1조 3,350억 5,100만원)보다 5.9%, 789억 4,000만원 증액 편성요청 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3년도 최종예산(1,977억 500만원)보다 △31.2%, △615억 9,700만원이 감액된 1,361억 8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하였고, **보조금**은 6조 9,912억 5,0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6조 5,225억 9,300만원)보다 7.2%, 4,686억 5,6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년도 최종예산(4조 205억 900만원)보다 △93.1%, △3조 7,417억 600만원 감액 편성요청 하였으며 **지방채**는 '24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예산에 편성요청 하지 않음

〈표 1-3〉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지방세 수입	24,235,274	24,112,184	123,090	0.5
세외수입	1,413,991	1,335,051	78,940	5.9
지방교부세	136,108	197,705	△61,597	△31.2
보조금	6,991,250	6,522,593	468,656	7.2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803	4,020,509	△3,741,706	△93.1

2) 특별회계

-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3년도 최종예산(14조 1,391억 1,900만원)보다 △10.4%, △1조 4,715억 1,200만원 감액된 12조 6,676억 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세외수입**은 3조 528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23년도 최종예산(2조 9,433억 1,800만원)보다 3.7%, 1,09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보조금**은 1조 7,241억 2,5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2조 1,651억 8,700만원)보다 △20.4%, △4,410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1조 1,799억 6,5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90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3,24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968억원)에서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23년도 최종예산(1조 6,929억 4,800만원)보다 △0.1%, △21억 8,200만원 감액 편성한 1조 6,907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조 1,998억 7,8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7조 3,372억 7,500만원)보다 △15.5%, △1조 1,373억 9,7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4〉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2,667,607	14,139,119	△1,471,512		△10.4
	세 외 수 입	3,052,837	2,943,318	109,519		3.7
	보 조 금	1,724,125	2,165,187	△441,062		△20.4
	지 방 채	1,690,765	1,692,948	△2,182		△0.1
	지 방 교 부 세	0	390	△39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99,878	7,337,275	△1,137,397		△15.5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4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5조 7,230억 3,5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8.7\%$, $\Delta 3$ 조 1,326억 1,600만원 감액된 33조 554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0.4\%$, $\Delta 1$ 조 4,715억 1,200만원 감액된 12조 6,676억 7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4조 5,104억 7,900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조 4,667억 5,400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37억 2,400만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12조 3,095억 5,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자치구 지원은 6조 4,888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4,423억 800만원과 특별회계 465억 1,7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8,43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8,413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8,700만원,
-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전출금 3,656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 채무상환 1조 1,88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697억 2,300만원,
- 반환금 등 1,02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5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263억 7,700만원,
- 기금전출금 3,199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99억 900만원 전액을 편성한 것임

○ 총계예산중 회계간 전·출입과 법정의무경비를 **실집행규모**는 28조 9,029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조 5,237억 2,200만원, 특별회계 11조 3,792억 7,600만원임

〈표 1-5〉 2024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규 모	45,723,035	50,327,163	△4,604,128	△9.1
일 반 회 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특 별 회 계	12,667,607	14,139,119	△1,471,512	△10.4

회 계 간 전 출 · 입 차 감	회 계 간 전 출 · 입 :	4조 5,104억 7,900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4조 4,667억 5,400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37억 2,400만원	

순 계 규 모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순 계 규 모	41,212,555	44,509,356	△3,296,801	△7.4
일 반 회 계	28,588,673	30,417,342	△1,828,669	△6.0
특 별 회 계	12,623,882	14,092,014	△1,468,132	△10.4

법 정 무 경 비 의 경 차	법 정 의 무 경 비 :	12조 3,095억 5,572만원	
	일 반 회 계	11조 649억 5,100만원	특 별 회 계 1조 2,446억 600만원
	- 자치구 지원	6조 4,423억 800만원	- 자치구 지원 465억 1,7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8,413억 1,900만원	- 교육청 지원 19억 8,700만원
	-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전출금	3,656억 6,300만원	-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전출금 -
	- 채 무 상 환	191억 5,900만원	- 채 무 상 환 1조 1,697억 2,300만원
	- 기금전출금	3,199억 900만원	- 기금 전 출 금 -
	- 반 환 금 등	765억 9,000만원	- 반 환 금 등 263억 7,700만원

실 집 행 규 모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실 집 행 규 모	28,902,998	30,060,739	△1,157,741	△3.8
일 반 회 계	17,523,722	17,012,719	511,003	3.0
특 별 회 계	11,379,276	13,048,020	△1,668,744	△1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533('23.11.15) 재구성

2) 성질별 자원 배분

- '24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45조 7,230억 3,500만원)중 회계간 전출입 4조 5,104억 7,900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조 2,125억 5,500만원으로

- 자치구지원, 교육청 지원, 국고반환, 재무활동 등의 이른바 ‘법정의무경비’ 를 차감한 사업비집행규모는 25조 8,348억 8,9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27조 1,824억 8,100만원)대비 $\Delta 5.0\%$, $\Delta 1$ 조 3,475억 9,2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 사업비에 대한 편성규모를 검토하면 사회복지 16조 3,531억 1,500만원 (35.8%), 도로·교통 2조 2,985억 500만원(5.0%), 공원·환경 2조 2,088억 7,200만원(4.8%), 도시안전 1조 7,301억 3,500만원 (3.8%), 일반행정 1조 184억 9,800만원(2.2%), 문화관광 8,766억 900만원(1.9%), 산업경제 8,496억 1,900만원(1.9%) 등으로 확인됨

〈표 1-6〉 총계기준 2024년도 부문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5,723,035	100.0	50,327,163	100.0	△4,604,128		△9.1
행	정 운영 경비	2,153,443	4.7	2,094,602	4.2	58,840		2.8
재	무 활동	7,402,613	16.2	9,425,630	18.7	△2,023,017		△21.5
교	육 청 지원	3,843,263	8.4	4,299,854	8.5	△456,591		△10.6
자	치 구 지원	6,488,825	14.2	7,324,593	14.6	△835,768		△11.4
사	업 비	25,834,889	56.5	27,182,481	54.0	△1,347,592		△5.0
	사 회 복 지	16,353,115	35.8	16,202,161	32.2	150,954		0.9
	환 경	2,208,872	4.8	2,465,576	4.9	△256,703		△10.4
	도 로 · 교 통	2,298,505	5.0	2,970,298	5.9	△671,792		△22.6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비	355,837	0.8	467,731	0.9	△111,894		△23.9
	산 업 경 제	849,619	1.9	1,036,480	2.1	△186,860		△18.0
	도 시 안 전	1,730,135	3.8	1,968,939	3.9	△238,803		△12.1
	문 화 관 광	876,609	1.9	894,856	1.8	△18,247		△2.0
	일 반 행 정	1,018,498	2.2	1,027,565	2.0	△9,067		△0.9
	예 비 비	143,694	0.3	148,871	0.3	△5,176		△3.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533('23.11.15) 재구성

〈표 1-7〉 2024년도 성질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45,723,035	100.0	50,327,163	100.0	△4,604,128		△9.1
	인 건 비	1,756,972	3.8	1,756,288	3.4	684		0.1
	물 건 비	1,527,624	3.3	1,522,296	3.0	5,328		0.3
	경 상 이 전	25,523,374	55.8	25,918,313	51.5	△394,939		△1.5
	자 본 지 출	5,258,059	11.5	6,580,768	13.0	△1,322,709		△20.1
	용자 및 출자	377,570	0.8	811,032	1.6	△433,461		△53.4
	보 전 재 원	1,028,489	2.2	791,453	1.5	237,035		29.9
	내 부 거 래	10,004,281	21.8	12,655,783	25.1	△2,651,501		△20.9
	예비비 및 기타	246,663	0.5	291,227	0.5	△44,564		△15.3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21~22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9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4년도에 운용할 19개 기금(28개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조 6,347억 4,100만원으로 '23년도(6조 5,300억 1,400만원)보다 △29.0%, △1조 8,952억 7,300만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24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안)	2023년도 ^{주1)}	증감	증감률
19개 기금 (28개 계정)	4,634,741	6,530,014	△1,895,273	△29.0

주1)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24년도 본예산과 '23년도 본예산 의결 시점으로 제출하고 있어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24년도 본예산과 '23년도 본예산을 대비하여 작성함

- 19개 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8조 143억 9,3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3년도말 조성액(7조 4,798억 9,500만원)보다 7.1%, 5,344억 9,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2024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2024년도말 조성액 (B)	증 감 (C=B-A)	증감률 (D=C/A)
		수 입	지 출			
합 계	7,479,895	2,141,391	1,606,893	8,014,393	534,497	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00,216	1,303,541	829,961	6,573,796	473,580	7.8
통합계정	4,243,553	1,268,536	95,016	5,417,073	1,173,520	27.7
재정안정화계정	1,856,663	35,005	734,945	1,156,723	△699,940	△37.7
중소기업육성기금	195,783	309,328	364,207	140,903	△54,879	△28.0
용자계정	110,138	265,480	291,007	84,610	△25,527	△23.2
투자계정	39,740	31,873	67,783	3,829	△35,910	△90.4
사회적경제계정	45,905	11,975	5,417	52,464	6,558	14.3
식품진흥기금	49,118	4,487	4,241	49,363	245	0.5
기후대응기금	68,416	19,047	51,325	36,138	△32,278	△47.2
도로굴착복구기금	28,170	35,520	40,671	23,019	△5,151	△18.3
성평등기금	23,914	1,163	1,080	23,997	83	0.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9,821	34,791	32,331	12,281	2,459	25.0
사회복지기금	43,120	8,555	15,574	36,101	△7,109	△16.5
노인복지계정	12,013	600	554	12,059	45	0.4
장애인복지계정	19,716	2,614	7,420	14,910	△4,805	△24.4
자활계정	9,776	560	1,203	9,132	△643	△6.6
주거지원계정	1,615	4,781	6,397	0.4	△1,615	△99.9
체육진흥기금	56,079	9,684	11,220	54,543	△1,536	△2.7
재난관리기금	713,770	296,631	139,264	871,137	157,367	22.0
재난계정	629,292	238,523	125,010	742,805	113,513	18.0
구호계정	84,478	58,108	14,254	128,332	43,854	51.9
남북교류협력기금	30,053	1,247	2,130	29,170	△882	△2.9
대외협력기금	4,253	5,058	6,777	2,534	△1719	△40.4
국내협력계정	1,422	1,388	2,060	750	△672	△47.3
국제협력계정	2,831	3,670	4,717	1,784	△1,047	△37.0
도시재생기금	71,617	46,130	87,568	30,179	△41,437	△57.9
관광진흥기금	6,607	1,281	510	7,379	771	11.7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138	1,048	510	1,677	538	47.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469	233	0	5,702	233	4.3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531	19,465	18,007	6,989	1,458	26.4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92	2,700	0	75,992	2,700	3.7
고향사랑기금	124	102	18	208	84	67.7
공공시설등설치기금	0	40,600	0	40,600	40,600	-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0	2,051	2,000	51	51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9~10를 재구성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됨
- '24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사업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4년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설정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채무부담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예산편성 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바, '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1,799억 6,5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00억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3,240억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968억원을 편성한 바, 총 1조 6,907억 6,5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24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7,218억원으로 산정하여 지난 7월 13일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 한도액(8,419억 6,500만원)은 ①도시철도공채 발행액(6,659억 6,500만원)과 ②'24년 차환채 발행액(1,760억원)이 해당되는 바,

- '24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7,218억원)과 별도한도액(8,419억 6,500만원)을 합한 2조 5,637억 6,500만원이며 예산총칙 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1조 6,907억 6,500만원으로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 2024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행규모	총 발행규모 ①		1,690,765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1,690,765
		기 금	-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②		2,563,765
		기 본 한 도 액	1,721,800
		별 도 한 도 액	841,965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665,965
		' 2 4 년 차 환 채 발 행 액	176,000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한도내 추가발행 여력 ②-①		872,999	

〈표 2-2〉 2024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기금명 (계정명)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24년도 지방채 편성액	세부 산출내역
총계					1,690,76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계					1,179,965	
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도시철도 공채	665,965	자동차 신규등록 등에 따른 공채매입
2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14,000	국비 : 25,600 자체 : 23,189 지방채 : 114,000
3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70,000	자체 : 63,285 지방채 : 70,000
4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220,000	자체 : 250,881 지방채 : 220,000
5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과	9호선 4단계 건설	35,000	국비 : 25,600 자체 : 8,827 지방채 : 35,000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50,000	자체 : 8,089 지방채 : 50,000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7차)	25,000	국비 : 24,960 자체 : 7,591 지방채 : 25,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계					90,000	
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90,000	자체 : 70,886 지방채 : 9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계					324,000	
9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일반 매입임대	12,000	국비 : 40,950 자체 : 11,950 지방채 : 12,000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12,000	국비 : 56,925 자체 : 13,000 지방채 : 12,000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80,000	국비 : 58,706 자체 : 15,456 지방채 : 180,000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120,000	자체 : 27,047 지방채 : 12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96,800	
13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난안전 관리실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20,000	자체 : 5,000 지방채 : 20,000
14		재난안전 관리실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10,000	자체 : 5,709 지방채 : 10,000
15		재난안전 관리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10,000	자체 : 26,286 지방채 : 10,000
16		재난안전 관리실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0,000	자체 : 10,000 지방채 : 30,000
17		균형발전 본부	동북권사업 과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0,000	자체 : 5,564 지방채 : 20,000
18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 담당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800	국비 : 5,100 자체 : 5,100 지방채 : 6,800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
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3조 554억원)의 0.3%, 1,012억원, 목적
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212억원임
-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3년도 본예산(1,281억
원) 대비 △5.3%, △69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
된 '23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309억 3,700만원) 등을 고려
할 때 '24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
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
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4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
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세입예산의 특징

- '24년도 예산안은 '23년도 최종예산(50조 3,271억 6,300만원)보다 △ 9.1%, △4조 6,041억 2,800만원 감액된 45조 7,230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3년도 최종예산(36조 1,880억 4,400만원)보다 △8.6%, △3조 1,326억 1,600만원이 감액된 33조 554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3년도 최종예산(14조 1,391억 1,900만원)보다 △10.4%, △1조 4,71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2조 6,676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 2024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45,723,035	50,327,163	△4,604,128	△9.1
일 반 회 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6
특 별 회 계	12,667,607	14,139,119	△1,471,512	△10.4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 세입예산은 세출수요증가, 물가의 자연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24년도 예산안은 '23년도 본예산보다 △3.1%, △1조 4,675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최종예산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4조 1,379억 4,600만원)이 초과 발생되어 회계연도중 이를 세입예산에 경정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규모가 확대되어 '24년도 세입예산안과 '23년도 최종예산을 비교하면 세입예산의 차이가 △4조 6,041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

□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3조 554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6조 1,880억 4,400만원)보다 △8.7%, △3조 1,326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표 2-4〉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지방세 수입	24,235,274	24,112,184	123,090	0.5
보통세	21,975,509	21,877,932	97,577	0.4
취득세	5,325,753	5,221,862	103,891	2.0
주민세	806,929	672,385	134,544	20.0
재산세	3,532,059	3,522,079	9,980	0.3
자동차세	1,199,481	1,052,439	147,042	14.0
레저세	116,676	106,133	10,543	9.9
담배소비세	571,727	582,205	△10,478	△1.8
지방소비세	2,730,596	2,786,892	△56,296	△2.0
지방소득세	7,692,288	7,933,937	△241,649	△3.0
목적세	2,037,565	2,020,552	17,013	0.8
지역자원시설세	335,187	313,104	22,083	7.1
지방교육세	1,702,378	1,707,448	△5,070	△0.3
지난년도수입	222,200	213,700	8,500	4.0
세외수입	1,413,991	1,335,051	78,940	5.9
경상적세외수입	815,398	784,933	30,464	3.9
재산임대수입	183,891	159,401	24,489	15.4
사용료수입	144,229	155,688	△11,458	△7.4
수수료수입	41,640	38,799	2,840	7.3
사업수입	319,463	296,900	22,563	7.6
징수교부금수입	10,992	11,394	△402	△3.5
이자수입	115,180	122,748	△7,568	△6.2
임시적세외수입	590,380	542,469	47,910	8.8
재산매각수입	144,033	149,218	△5,184	△3.5
자치단체간부담금	13,276	13,770	△494	△3.6
보조금반환수입	248,387	213,478	34,908	16.4
기타수입	154,238	135,503	18,735	13.8
지난연도수입	30,445	30,498	△53	△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12	7,648	564	7.4
과징금	920	691	228	33.1
변상금	4,678	4,470	207	4.7
과태료	2,508	2,361	146	6.2
부담금	105	124	△18	△15.3
지방교부세	136,108	197,705	△61,597	△31.2
보통교부세	103,604	155,407	△51,803	△33.3
특별교부세	-	4,315	△4,315	△100.0
소방안전교부세	32,504	37,983	△5,479	△14.4
보조금	6,991,250	6,522,593	468,656	7.2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803	4,020,509	△3,741,706	△93.1
보전수입 등	37,400	3,328,053	△3,290,652	△98.9
내부거래	241,402	692,456	△451,054	△65.1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24조 1,121억 8,400만원)보다 0.5%, 1,230억 9,000만원 증액된 24조 2,352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1조 3,350억 5,100만원)보다 5.9%, 789억 4,000만원 증액된 1조 4,13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1,977억 500만원)보다 △31.2%, △615억 9,700만원 감액된 1,361억 800만원, **보조금**은 '23년도 최종예산(6조 5,225억 9,300만원)보다 7.2%, 4,686억 5,600만원 증액된 6조 9,9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의 경우, '24년도에도 일반회계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음에 따라 '23년도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년도 최종예산(4조 205억 900만원)보다 △93.1%, △3조 7,417억 600만원 감액된 2,788억 3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1)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의 세입예산액은 '23년도 최종예산(24조 1,121억 8,400만원)보다 0.5%, 1,230억 9,000만원 증액된 24조 2,352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등을 인용하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 기여도의 감소세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예상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금년 1월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신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요인이 잠재된 것으로 사료되어 부동산 거래 둔화

와 부동산 거래에 기반한 취득세와 소득·소비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의 세수전망 또한 증수요인보다 감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4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33,055,427	36,188,044	△3,132,616	△8.7
지방세수입	24,235,274	24,112,184	123,090	0.5
보 통 세	21,975,509	21,877,932	97,577	0.4
취 득 세	5,325,753	5,221,862	103,891	2.0
주 민 세	806,929	672,385	134,544	20.0
재 산 세	3,532,059	3,522,079	9,980	0.3
자 동 차 세	1,199,481	1,052,439	147,042	14.0
레 저 세	116,676	106,133	10,543	9.9
담 배 소 비 세	571,727	582,205	△10,478	△1.8
지 방 소 비 세	2,730,596	2,786,892	△56,296	△2.0
지 방 소 득 세	7,692,288	7,933,937	△241,649	△3.0
목 적 세	2,037,565	2,020,552	17,013	0.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35,187	313,104	22,083	7.1
지 방 교 육 세	1,702,378	1,707,448	△5,070	△0.3
지 난 년 도 수 입	222,200	213,700	8,500	4.0

- **취득세**는 '23년도 최종예산(5조 2,218억 6,200만원)보다 2.0%, 1,038억 9,100만원 증액된 5조 3,257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및 대출 금리변동, 자동차 교체수요 등에 의하여 세수의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임
- '23년 2/4분기 이후 부동산 취득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친환경 자동차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23년도 대비 1,038억 9,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나,

- 장기화된 부동산 대출 고금리와 코스피 지수 하락 등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고 물가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상향 하는 등의 변수가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측되었던 회계연도에도 취득세 증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초과 취득세 세입에 대한 세출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 지난 '17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액(4조 70억 5,400만원)보다 32.1%, 1조 2,881억 5,600만원이 초과수납된 사례가 있고, '18회계연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부동산 거래둔화 및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세입예산액(4조 3,946억 2,300만원) 보다 7,971억 1,4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 '19회계연도에도 부동산 거래 둔화를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2,737억 8,800만원) 보다 1조 3,170억 1,800만원 초과수납 되었으며, '20회계연도에도 당초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과는 달리 결산결과 당초 세입예산액(4조 6,329억 6,700만원) 보다 2조 8,377억 6,4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21회계연도에도 당초 세입예산액(5조 589억 3,700만원) 보다 2조 9,510억 9,800만원 초과수납된 사례가 있어
- 세입예산 편성당시의 보수적인 세수추계와 세입결산시점에 나타난 시세수납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현황과 부동산거래 견인요인 등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세는 '23년도 최종예산(6,723억 8,500만원)보다 20.0%, 1,345억 4,400만원 증액된 8,069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취업자수, 임금상승률, 세액신장률 등에 의하여 세수가 변동될 수 있는 세원임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민세 수입은 연평균 2.6% 전망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인구가 정체 혹은 둔화되어 신장될 여지가 낮으나,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개인·법인 사업자 증가로 징수대상이 소폭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2-6〉 2024년도 주민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2024년도 추계 ^{주1)} (A)	2023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806,929	672,385	782,143	134,544	20.0	24,786	3.2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재산세**는 '23년도 최종예산(3조 5,220억 7,900만원)보다 0.3%, 99억 8,000만원 증액된 3조 5,320억 5,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1조 6,727억 3,400만원)와 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1조 8,593억 2,500만원)로 구성됨
-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의 50%로 산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등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23년 본예산(1조 9,470억 3,400만원) 대비 △14.1%, △2,743억원 감액한 1조 6,727억 3,4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표 2-7〉 특별시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634,326	1,818,860	1,678,234	1,672,734
징수액	1,718,520	1,886,185	1,649,477	-
결산율	105.2	103.7	98.3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각각 전출되는 재원으로
- 동 세목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본예산 편성시 증가하던 세원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등으로 인해 '23년 본예산(2조 2,162억 4,500만원) 대비 △16.1%, △3,569억 2,000만원 감액한 1조 8,593억 2,500만원을 편성한 바,

- 다만, '2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물리적 특성(층, 면적 등)의 변화를 수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시가격 산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세 수입의 경우에도 유동요인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됨

〈표 2-8〉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760,231	2,008,732	1,843,845	1,859,325
징수액	1,927,548	2,032,700	1,821,608	
결산율	109.5	101.2	98.8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자동차세**는 '23년도 최종예산(1조 524억 3,900만원)보다 14.0%, 1,470억 4,200만원 증액된 1조 1,994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자동차세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됨

〈표 2-9〉 2024년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주1)} (A)	2023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199,481	1,052,439	990,840	147,042	14.0	208,641	21.1
소유분	641,082	642,485	637,069	△1,403	△0.2	4,013	0.6
주행분	558,399	409,954	353,771	148,445	36.2	204,628	57.8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다만, **소유분 자동차세**(6,410억 8,200만원)의 경우, SUV나 고가차량 판매 확대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세액의 5%가 공제되는 선납액 제도에 대한 이용 증가로 일부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의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가 검토중인 차량가격, 차량중량 등의 새로운 과세체계에 따라 세수도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2-10〉 소유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615,065	616,400	642,485	641,082
징수액	624,140	626,038	637,069	
결산율	101.5	101.6	99.2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주행분 자동차세**(5,583억 9,900만원)의 경우에는 '23년도(4,099억 5,400만원)보다 36.2%, 1,484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감산 조치 등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23년도 12월까지 시행한 바 있어 '24년도에도 인하정책이 유지될 경우 징수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가로 세수감소 요인이 누적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변동요인 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주행분 자동차세의 세수전망 또한 회계연도 개시이후 유가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1〉 주행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571,176	600,132	409,954	558,399
징수액	539,954	399,766	353,771	
결산율	94.5	66.6	86.3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목으로 '23년도 최종예산(1,061억 3,300만원)보다 9.9%, 105억 4,300만원 증액된 1,166억 7,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의 세입 회복을 전망하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레저세는 '21년도 결산율이 10.4%에 불과 하였으나, '22년도는 335.5%의 결산율을 나타내어 '24년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징수액을 회복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2〉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도 ^{주1)}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24,873	42,702	29,891	106,133	116,676
징수액	22,924	4,439	100,296	111,734	
결산율	18.4	10.4	335.5	105.3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로 '23년도 최종예산(5,822억 500만원)보다 △1.8%, △104억 7,800만원 감액된 5,717억 2,700만원을 편성한 바, 정부의 금연정책 및 흡연률 감소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감소 전망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보건복지부가 '21년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대표 지표중 금연이 포함되어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가인상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어 담배값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3〉 담배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도 ^{주1)}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564,349	580,150	571,531	582,205	571,727
징수액	605,200	594,186	588,594	577,036	
결산율	107.2	102.4	103.0	99.1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지방소비세는 '23년도 최종예산(2조 7,868억 9,200만원)보다 △2.0%, △562억 9,600만원 감액된 2조 7,305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납입관리자(충북도지사)가 시·도 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동 세목은 물가상승, 소비심리 둔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 또한 '24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또한 '23년도(83조 2,035억원)보다 △1조 7,967억원(△2.2%) 감액된 81조 4,068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모(△2.0%)로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4〉 2024년도 지방소비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추계 ^{주1)} (A)	2023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2,730,596	2,786,892	2,711,129	△56,296	△2.0	19,467	0.7
소비지출 (5 %)	707,814	711,741	703,185	△3,927	△0.6	4,629	0.7
취득세보전 (6 %)	901,406	930,014	887,040	△28,608	△3.1	14,366	1.6
전환사업 (14.3%)	1,121,376	1,145,137	1,120,904	△23,761	△2.1	472	0.0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에 소비지출 보전분 비율(5%)과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①소비지출 보전분, 부가가치세 예산에 취득세 등 보전분 비율(6%)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는 ②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비율(14.3%)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③전환사업 등 보전분으로 구성되는 바,
- '24년도 서울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출분(5%), 취득세보전분(6%), 전환사업 보전분에 적용되어야 할 '24년도 서울시 안분율이 확정되지 않아 '23년도 안분율(12.99%)을 적용한 것으로 안분율 확정후 세수에 증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 서울시 안분율은 소비자 심리를 표현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율을 산정하고 있어 지역별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등 서울시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5〉 서울시 지방소비세 안분 비율

(단위 : %, 원)

구 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주3)}
소비지출분 (5%)	12,980	12,996	12,990	12,990
취득세보전분(6%)	23,390	23,749	22,790	22,790
전환사업 보전분	267억	790억	1,549억	1,549억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지방소득세**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7조 9,339억 3,700만원)보다 △ 3.0%, △2,416억 4,900만원 감액된 7조 6,922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4년도 시세 추계액의 32%를 점유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그리고 근로 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며,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세목으로 사료됨
-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4년도 국세수입중 ①종합소득세와 ②법인세는 '23년도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3년도 예산 대비 각각 △1조 6,573억원, △27조 3,320억원 감액 편성하고 ③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24년도 최저시급, 9,860원/'23년도 대비 2.5% 인상)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23년 대비 1조 4,6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④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23년 예산대비 △7조 3,032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경우, ①종합소득분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감액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종합소득분은 '23년 보다 5.2%, 469억 8,800만원 증액하고, ②법인소득분은 법인실적 감소 등으로 '23년 대비 △13.6%, △3,568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 ③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서울시 생활임금도도 상승하였고, 임시직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어 세입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23년도(3조 6,521억 8,000만원)대비 2.6%, 959억 7,400만원 증가된 3조 7,481억 5,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④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23년도(6,810억 8,300만원)보다 △3.7%, △277억 4,800만원 감액된 7,130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부동산 거래에 따라 유동성이 높고,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 등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수감소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6〉 2023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24년도 예산안 ^{주1)}	'23년도 최종예산 ^{주2)}	증·감	증감률
계	7,692,288	7,933,937	△241,649	△3.0
①종합소득분	956,921	909,933	46,988	5.2
②양도소득분	713,025	740,773	△27,748	△3.7
③법인소득분	2,274,188	2,631,051	△356,863	△13.6
④특별징수분	3,748,154	3,652,180	95,974	2.6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소득세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소득 증가분이 발생되어 회계연도 개시 이후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23년 8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가 '24년도 경제성장률을 2.2% 수준으로 보고 있음에도 저성장 기조 또한 예상되고 있어,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7〉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1년도 ^{주1)}	'22년도 ^{주1)}	'23년도 전망 ^{주2)}	'24년도 추계 ^{주3)}
예산액	5,196,430	6,052,140	7,933,937	7,692,288
징수액	7,427,344	8,834,457	7,841,970	
결산율	144.9	146.0	98.8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23년도 최종예산(3,131억 400만원)보다 7.1%, 220억 8,300만원 증액된 3,351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지하수, 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해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선박에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화력발전소의 '24년도 발전예정량이 증가하고 '23년도 결산 전망 또한 '23년도 최종예산보다 2.8%, 94억 1,100만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도 세입 예산을 소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8〉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24년도 예산안 ^{주1)}	'23년도 예산 ^{주2)}	'23년도 전망	증·감	증감률
계	335,187	313,104	324,593	22,083	7.1
특정자원분	106	104	109	2	1.9
특정시설분	1,286	1,169	1,103	117	10.0
소방분	333,795	311,831	323,381	21,964	7.0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중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추계 후 세목별 세율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세목으로 '23년도 최종예산(1조 7,074억 4,800만원)보다 △0.3%, △50억 7,000만원 감액된 1조 7,023억 7,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19〉 2024년도 지방교육세 세목별 추계액

(단위 : 백만원)

과목명	2024년도 예산안 ^{주1)}	세율 ^{주2)}	지방교육세 추계액
합 계	7,383,563		1,702,378
부 동 산 취 득 세	2,268,399	20%	453,680
재 산 세	3,345,468	20%	669,094
균 등 분 주 민 세	56,672	25%	14,168
자 동 차 세	623,388	30%	187,016
레 저 세	116,676	40%	46,670
담 배 소 비 세	571,727	43.99%	251,503
등 록 면 허 세	401,233	20%	80,247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19996 ('23.10.31) “2024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세외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1조 3,350억 5,100만원)보다 5.9%, 789억 4,000만원 증액된 1조 4,139억 9,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20〉 2024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세 외 수 입	1,413,991	1,335,051	78,940	5.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15,398	784,933	30,464	3.9
재 산 임 대 수 입	183,891	159,401	24,489	15.4
사 용 료 수 입	144,229	155,688	△11,458	△7.4
수 수 료 수 입	41,640	38,799	2,840	7.3
사 업 수 입	319,463	296,900	22,563	7.6
징수교부금수입	10,992	11,394	△402	△3.5
이 자 수 입	115,180	122,748	△7,568	△6.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90,380	542,469	47,910	8.8
재 산 매 각 수 입	144,033	149,218	△5,184	△3.5
자치단체간부담금	13,276	13,770	△494	△3.6
보조금반환수입	248,387	213,478	34,908	16.4
기 타 수 입	154,238	135,503	18,735	13.8
지 난 연 도 수 입	30,445	30,498	△53	△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12	7,648	564	7.4
과 징 금	920	691	228	33.1
변 상 금	4,678	4,470	207	4.7
과 태 료	2,508	2,361	146	6.2
부 담 금	105	124	△18	△15.3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7,849억 3,300만원)보다 3.9%, 304억 6,400만원 증액된 8,153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94억 100만원)보다 15.4%, 244억 8,900만원 증액한 1,838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지하도상가, 서울국제금융센터부지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56억 8,800만원) 대비 △7.4%, △114억 5,800만원 감액한 1,442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시도도로상 전주, 수도권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사용료(847억 100만원), 하천사용료(67억 7,400만원), 운동장·공연장 등의 입장료수입(174억 100만원), 주차요금수입(87억 1,800만원), 기타사용료(266억 3,400만원)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수수료수입**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387억 9,900만원)대비 7.3% 28억 4,000만원 증액한 416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의료사업수입인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을 '23년도보다 32억 200만원 증액편성한 것임
 - **사업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2,969억원)보다 7.6%, 225억 6,300만원 증액된 3,194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1,704억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1,089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 다만,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경우, 지난 '20년도 본예산부터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매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용지가 매각 수입에 있어 허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매각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세입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각될 경우 추경이나 결산결과 실수납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징수교부금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113억 9,400만원)보다 △3.5%, △4억 200만원 감액된 109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분부담금(79억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28억 9,900만원)이 주요 수입 내역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227억 4,800만원)보다 △6.2%, △75억 6,800만원 감액한 1,15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공운용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년도(1,111억 3,600만원)보다 △113억 4,000만원 감액된 997억 9,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회계연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감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5,424억 6,900만원)보다 8.8%, 479억 1,000만원 증액된 5,903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492억 1,800만원)보다 △3.4%, △ 51억 8,400만원 감액한 1440억 3,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1,488억 9,9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됨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이나 수혜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37억 7,000만원)보다 △3.5%, △4억 9,400만원 감액편성한 132억 7,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시비보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반환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2,134억 7,800만원)보다 16.4%, 349억 800만원 증액된 2,48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당해연도 이전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한 수입금인 **지난년도 수입**은 '23년도 최종예산(304억 9,8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액한 304억 4,500만원을 편성계획 하였고, **기타수입**은 금년도 예산(1,355억 300만원)보다 187억 3,500만원 증가한 1,542억 3,800만원을 편성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3년도 최종예산(76억 4,800만원)보다 7.4%, 5억 6,400만원 증액된 82억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법령상 의무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의 '2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예산(6억 9,1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 증액한 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법령 및 계약위반 등에 따른 **변상금**은 금년도예산(44억 7,000만원)보다 2억 700만원 증액한 46억 7,800만원을 편성함

- 행정질서 및 의무이행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인 **과태료**의 '24년도 예산안은 25억 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23억 6,100만원) 1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으로 금년도보다(1억 5,600만원) △ 1,800만원 감액한 1억 2,400만원을 편성함

- 다만,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은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수납률에 대한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어 보수적인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75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매년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한 사례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원관리, 변동요인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 세수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의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24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977억 500만원)보다 △31.2%, △615억 9,700만원 감액된 1,361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2-21〉 2024년도 지방교부세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지 방 교 부 세	136,108	197,705	△61,597	△31.2
보 통 교 부 세	103,604	155,407	△51,803	△33.3
특 별 교 부 세	-	4,315	△4,315	△100.0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2,504	37,983	△5,479	△14.4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 '24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1,554억 700만원)보다 △33.3%, △518억 300만원 감액된 1,036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금년 12월 중 보통교부세 확정 교부액을 통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변동의 여지가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79억 8,300만원)보다 △14.4%, △54억 7,900만원 감액된 325억 400만원으로 편성한 바,
 -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보통교부세의 편성사례처럼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23년도 예산에 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따라 ①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과 ②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직 인건비분의 합계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 12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액이 통보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고 정부예산 확정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액 등이 통보되고 있어
-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밀성과 안정적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임

- '23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43억 1,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간주처리를 통해 집행된 사례가 있어 '24년도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안중 특별교부세 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임

○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3년도 최종예산(6조 5,225억 9,300만원)보다 7.2%, 4,686억 5,600만원이 증액된 6조 9,91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생계급여, 영아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6조

1,266억 9,200만원)보다 8.3%, 5,102억 4,600만원 증액된 6조 6,36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1,309억 9,600만원)보다 △36.0%, △479억 7,900만원 감액된 83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기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2,649억 400만원)보다 2.4%, 63억 8,900만원 증액된 2,712억 9,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세입과목으로 '24년도에도 일반회계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조 205억 900만원)보다 △93.1%, △3조 7,417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한 것임

○ '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37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15억 7,9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7억 7,700만원을 편성한 바, '23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부거래**는 2,414억 2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14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2조 6,676억 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7.7%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4조 1,391억 1,900만원)보다 △10.4%, △1조 4,715억 1,200만원 감액편성한 것임
- '24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22〉 2024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륜
총 계	45,723,035	100.0%	50,327,163	100.0%	△4,604,128	△9.1
일 반 회 계	33,055,427	72.3	36,188,044	71.9	△3,132,616	△8.7
특 별 회 계	12,667,607	27.7	14,139,119	28.1	△1,471,512	△10.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821,823	4.0	1,843,749	3.7	△21,926	△1.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70,000	2.1	930,000	1.8	40,000	4.3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51,823	1.9	913,749	1.8	△61,926	△6.8
기 타 특 별 회 계	10,845,783	23.7	12,295,369	24.4	△1,449,585	△11.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2조 2,953억 6,900만원)보다 △11.8%, △1조 4,495억 8,500만원 감액된 10조 8,45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표 2-23〉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 감 률
계	10,845,783 100	12,295,369 100	△1,449,585	△11.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49,037 18.9	2,019,844 16.4	29,192	1.4
교통특별사업계	1,523,235 14.0	2,159,438 17.6	△636,202	△29.5
광역교통시설회계	223,450 2.1	318,775 2.6	△95,324	△29.9
주택특별사업계	2,230,140 20.6	2,997,731 24.4	△767,591	△25.6
도시개발회계	1,677,917 15.5	1,650,199 13.4	27,718	1.7
균형발전회계	178,751 1.6	169,778 1.4	8,972	5.3
학교용지부담금계	8,658 0.1	36,771 0.3	△28,113	△76.5
의료급여기금계	1,915,163 17.7	1,928,934 15.7	△13,771	△0.7
한강수질개선회계	32,458 0.3	36,612 0.3	△4,153	△11.3
소방특별회계	1,006,971 9.3	977,282 7.9	29,689	3.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198억 4,400만원)보다 1.4%, 291억 9,200만원 증액된 2조 49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 세입의 주요내역은 예수금 수입을 5,306억원 편성하고, 지방채도 금년도보다 28억 1,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1,962억 2,900만원)은 △4,148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1,594억 3,800만원)보다 △29.5%, △6,362억 200만원 감액된 1조 5,232억 3,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위례선 도시철도 LH부담금(1,465억 3,800만원) 등 부담금 수입을 금년도보다 688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이나, 전입금은 금년도보다 △6,142억 4,7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잉여금도 금년도보다 △942억 9,9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187억 7,500만원)보다 △29.9%, △953억 2,400만원 감액된 2,234억 5,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금년도보다 △442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기타수입등을 편성하지 않아 금년도보다 △318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9,977억 3,100만원)보다 △25.6%, △7,675억 9,100만원 감액된 2조 2,30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국고보조금 등을 금년도보다 △4,881억 7,900만원 감액편성 하고, 잉여금도 금년도보다 △2,446억 4,500만원 감액편성 하여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6,501억 9,900만원)보다 1.7%, 277억 1,800만원 증액된 1조 6,779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을 금년도보다 264억 5,800만원 증액편성 하고,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610억 400만원 증액편성 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697억 7,800만원)보다 5.3%, 89억 7,200만원 증액된 1,787억 5,1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금년도보다 513억 4,500만원 증액편성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금년도보다 △421억 100만원 감액편성 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67억 7,100만원)보다 △76.5%, 281억 1,300만원 감액된 86억 5,8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184억 4,800만원 감액 편성되고, '24년도 예산안에 잉여금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9,289억 3,400만원)보다 △0.7%, △137억 7,100만원 감액된 1조 9,151억 6,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잉여금이 △131억 8,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66억 1,200만원)보다 △11.3%, △41억 5,300만원 감액된 324억 5,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고보조금등이 △34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9,772억 8,200만원)보다 3.0%, 296억 8,900만원 증액된 1조 69억 7,1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전입금이 249억 8,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4〉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사 유
전출 회계	전 입 회 계				
일반 → 특별		4,466,754	5,513,407	△1,064,653	
일 회 계	군 특 형 별 발 회 전 계	76,112	118,213	△42,101	▸ 국고보조금 등 수입증가
	의 기 료 급 여 금 회 계	952,715	952,725	△10	▸ 국비 내시 감소
	소 특 방 회 계	720,761	700,829	19,931	▸ 소방안전 교부세 가내시액 증가 등
		249,729	244,675	5,054	▸ 소방안전 교부세 가내시액 증가 등
	교 특 통 사 회 계	401,809	1,013,224	△611,415	▸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감소 등
		185,932	188,764	△2,832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추계액 감소
	주 특 택 사 회 계	185,932	188,764	△2,832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예산 추계액 감소
		185,932	188,764	△2,832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예산 추계액 감소
	도 시 개 발	1,301,527	1,321,351	△19,82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예산 추계액 감소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196,229	611,037	△414,807	▸ 회계 재원 부족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
공 하 기 수 도 회 계	1,837	1,583	253	▸ '23년 이후 준공업 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액을 전략산업 기반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공 하 기 수 도 회 계	8,235	1,472	6,763	▸ 설계완료 후 공사진행('23년 설계용역 완료, '24년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시설 부대비 등 소요예산 증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11. 1)

〈표 2-25〉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3,724	47,104	△3,379	
공 하 수 업 도 특 별 회 계	수 도 사 업 계 특 별 회 계	22,000	22,000	-	▸ 2024년 하수도사용료 및 과년도 체납 징수 전망치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반영
	한 강 수 질 선 개 특 별 회 계	100	700	△600	▸ 23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집행 잔액 발생
한 강 수 질 선 개 특 별 회 계	수 도 사 업 계 특 별 회 계	3,170	3,210	△40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수 도 사 업 계 특 별 회 계	823	844	△21	
한 강 수 질 선 개 특 별 회 계	공 하 수 업 도 특 별 회 계	3,037	3,402	△365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과 안건 기준 사업비 편성
	공 하 수 업 도 특 별 회 계	14,594	16,948	△2,35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3.11. 1)

〈표 2-26〉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2 0 2 3	증 감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0,845,783	100.0	12,295,369	100.0	△1,449,585	△11.8
자 체 수 입	1,338,571	12.3	1,251,066	10.2	87,505	7.0
경상적세외수입	779,168		630,763		148,405	23.5
임시적세외수입	96,276		132,626		△36,350	△27.4
지방행정제재 · 부 과 금	463,125		487,676		△24,551	△5.0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6,095,277	56.2	7,186,922	58.5	△1,091,645	△15.2
보 전 수 입 등	444,926		861,684		△416,758	△48.4
순세계잉여금	422,638		825,621		△402,983	△48.8
전년도이월금	3,244		15,186		△11,942	△78.6
용자금원금수입	19,043		18,849		194	1.0
보조금등반환금	0		2,027		△2027	△100.0
내 부 거 래	5,650,351		6,325,237		△674,886	△10.7
전 입 금	4,456,782		5,760,368		△1,303,586	△22.6
예탁금및예수금	1,193,569		564,869		628,700	111.3
지 방 교 부 세 (특 별 교 부 세)	0		390		0.1	△390
공 채 및 차 입 금	1,690,765	15.6	1,692,948	13.8	△2,183	△0.1
국 고 보 조 금 등	1,721,168	15.9	2,164,041	17.6	△442,873	△20.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3.11. 1), 「2024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서」 재구성

○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6,929억 4,800만원)보다 △21억 8,300만원 감액된 1조 6,907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27〉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4 (예 산 안)	2 0 2 3 (최종 예산)	증 감	증 감 륜		
계				1,690,765	1,692,948	△2,183	△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79,965	1,177,152	2,813	0.2		
	매	출	공	채	665,965	716,252	△50,287	△7.0	
	모	집	공	채	514,000	460,900	53,100	11.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90,000	85,000	5,000	5.9		
주택사업특별회계 (모 집 공 채)				324,000	395,000	△71,000	△18.0		
도시개발특별회계				96,800	35,796	61,004	170.4		
	정	부	자	금	채	6,800	25,796	△18,996	△73.6
	모	집	공	채	90,000	10,000	80,000	800.0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매출공채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비용인 도시철도매출공채 6,659억 6,500만원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1,140억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700억원), 지하철 부채상환(2,200억원), 9호선 4단계 건설(350억원),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500억원),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250억원)를 위한 모집공채 5,140억원을 차입하고자 금년도(1조 1,771억 5,200만원)보다 28억 1,300만원 증액된 1조 1,796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등 광역철도 건설비를 부담하고자 지방채 9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최종예산(85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 사업과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고자 일반 매입임대(120억원), 청년 매입임대(12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800억원),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1,2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950억원)보다 △710억원 감액된 3,240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68억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200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100억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100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3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2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 9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57억 9,600만원)보다 610억 400만원 증액된 968억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1,640억 4,100만원)보다 △4,428억 7,300만원 감액된 1조 7,211억 6,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8〉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4 (예 산 안)	2 0 2 3 (최 종 예 산)	증 감	증 감 륜
계	1,721,168	2,164,041	△442,873	△20.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40,851	161,422	△20,571	△12.7
교통사업특별회계	55,248	43,833	11,415	26.0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6,774	20,246	△13,472	△66.5
주택사업특별회계	309,281	797,461	△488,180	△61.2
도시개발특별회계	167,438	140,979	26,459	18.8
균형발전특별회계	56,557	11,160	45,397	406.8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	-	-	-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952,715	952,725	△10	△0.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28,942	32,382	△3,440	△10.6
소방특별회계	3,359	3,829	△470	△12.3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 되어 있는 바,

- 관련 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령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관련 법령에 의한 이월금,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당해 연도('23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4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자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은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해당 특별회계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원 자체를 미리 소진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예산의 건전재정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초치 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9〉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 별 회 계	'24 예산안 편성 ^{주1)} (순세계잉여금)	'23 본예산 편성(A) ^{주2)} (순세계잉여금)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B) ^{주3)} (순세계잉여금)	추 증 요 경 · 칭 안 감 액 (C)=(B)-(A)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08,305	78,349	202,604	124,254
①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34	9,313	△6,631	△9,31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99,552	157,636	431,536	286,56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6,320	74,788	98,876	24,087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5,130	4,134	18,318	14,183
②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69	870	362	△508
③ 소 방 특 별 회 계	28,023	25,281	19,088	△6,193

주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3.11. 1)

주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주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지난 '23년도 본예산 편성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한 바,
- '23년 6월, '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①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3억 1,300만원, ②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800만원, ③소방특별회계 △61억 9,3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71개 사업, 4조 746억원이며, 금년 당초예산(293개 사업, 3조 8,937억원) 대비 △22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1,80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 247개(3조 7,977억 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사업(2,759억 4,300만원) 21개, 기금사업 3개(10억 2,3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0〉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271	4,074,669	3,893,721	180,948	4.6
예 산	268	4,073,646	3,892,494	181,151	4.6
일 반 회 계	247	3,797,703	3,608,464	189,239	5.2
특 별 회 계	21	275,943	284,030	△8,088	△2.8
기 금	3	1,023	1,227	△204	△16.6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7 재구성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684억 8,500만원(42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3,758억 9,200만원(43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2조 1,240억 5,300만원(99개 사업), 기타사업 1조 2,062억 3,800만원(8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33개 실·본부·국에 271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가족정책실 83개 사업(1조 7,077억 1,600만원), 복지정책실 40개 사업(1조 4,911억 2,600만원), 경제정책실 19개 사업(2,482억 5,200만원), 주택정책실 6개 사업(1,722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8.8%, 3조 6,193억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본부·국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1〉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71개 사업	4,074,669	100	3,893,721	100	18,948	4.6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주1)}	368,485	9.0	805,244	20.7	△436,758	△54.2
	성별영향평가사업 ^{주2)}	375,892	9.2	871,173	22.4	△495,281	△56.8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주3)}	2,124,053	52.1	2,217,304	56.9	△93,251	△4.2
	기타사업 ^{주4)}	1,206,238	29.6	0	-	1,206,238	순증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8 재구성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4~'28)*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96)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시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4) 기타사업

-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표 2-32〉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총 계	271	4,074,669	100	3,893,721	100	180,948	4.6
홍 보 기 획 관	2	8,922	0.2	6,229	0.1	2,693	43.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441	0.1	-	0.0	441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83	1,707,716	41.9	1,707,957	43.8	△241	△0.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5	55,631	1.3	53,722	1.3	1,908	3.5
비 상 기 획 관	1	297	0.0	345	0.0	△47	△13.7
디 지 털 정 책 관	4	1,557	0.1	2,291	0.1	△734	△32.0
미 래 청 년 기 획 단	8	85,115	2.0	82,952	2.1	2,163	2.6
기 획 조 정 실	1	683	0.1	596	0.1	88	14.7
소 방 재 난 본 부	5	3,946	0.1	3,525	0.1	421	11.9
경 제 정 책 실	19	248,252	6.0	257,075	6.6	△8,822	△3.4
복 지 정 책 실	40	1,491,126	36.6	1,322,109	33.9	169,017	12.7
도 시 교 통 실	5	84,338	2.0	89,732	2.3	△5,394	△6.0
기 후 환 경 본 부	3	3,074	0.1	7,684	0.2	△4,609	△59.9
문 화 본 부	11	12,231	0.3	20,808	0.5	△8,577	△41.2
관 광 체 육 국	5	32,900	0.8	37,853	0.9	△4,953	△13.0
평 생 교 육 국	8	58,267	1.4	55,658	1.4	2,608	4.6
시 민 건 강 국	19	87,028	2.1	61,711	1.5	25,318	41.0
행 정 국	10	7,988	0.2	7,388	0.1	601	8.1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300	0.0	2,191	0.1	△1,891	△86.3
디 자 인 정 책 관	1	2,407	0.1	3,668	0.1	△1,261	△34.3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	33	0.0	46	0.0	△13	△28.3
재 난 안 전 관 리 실	2	1,194	0.1	1,132	0.1	62	5.5
주 택 정 책 실	6	172,206	4.2	155,982	4.0	16,224	10.4
도 시 계 획 국	1	130	0.0	120	0.0	10	8.3
균 형 발 전 본 부	3	713	0.1	1,157	0.1	△445	△38.4
푸 른 도 시 여 가 국	3	5,525	0.1	1,495	0.1	4,030	269.6
물 순 환 안 전 국	1	346	0.0	339	0.1	7	2.0
미 래 한 강 본 부	2	993	0.1	8,246	0.2	△7,252	△87.9
서 울 역 사 박 물 관	2	598	0.1	637	0.1	△39	△6.1
시 립 미 술 관	2	266	0.0	261	0.0	4	1.7
감 사 위 원 회	5	411	0.0	591	0.1	△180	△30.4
사 민 감 사 옴 부 즌 만 위 원 회	1	34	0.0	78	0.0	△44	△56.3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	0.0	144	0.0	△144	순감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10 재구성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4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28개 정책사업목표, 555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23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25개 정책사업목표, 53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4년도에는 성과계획 지표를 세분화함에 따라 지표 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3〉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9	228	436	555	43,901,212	45,374,112	△1,472,901
대 변 인	1	1	2	2	1,826	1,720	106
홍 보 기 획 관	1	5	11	12	67,914	87,092	△19,17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2	3	3	5,136	3,101	2,035
여성가족정책실	1	7	13	22	3,281,556	3,088,069	193,48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8	13	21	231,665	336,477	△104,812
비 상 기 획 관	1	1	2	7	6,932	5,506	1,426
디 지 털 정 책 관	1	8	15	20	153,799	159,153	△5,354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614	1,103	510
미래청년기획단	1	2	3	4	111,489	113,719	△2,231
기 획 조 정 실	1	10	18	21	918,404	988,472	△70,068
소 방 재 난 본 부	1	10	24	20	1,977,462	1,913,944	63,518
경 제 정 책 실	1	11	22	25	646,042	684,896	△38,854
복 지 정 책 실	1	8	14	26	10,703,315	9,897,740	805,576
도 시 교 통 실	1	10	18	18	3,231,628	3,866,770	△635,143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5	27	606,605	515,311	91,295
문 화 본 부	1	10	13	35	598,658	596,626	2,032
관 광 체 육 국	1	5	9	18	265,982	256,756	9,227
평 생 교 육 국	1	6	10	15	4,331,366	4,469,727	△138,361
시 민 건 강 국	1	13	30	26	632,975	633,945	△970
행 정 국	1	8	12	13	4,547,738	4,492,705	55,034
재 무 국	1	6	12	12	3,142,552	3,382,339	△239,787
미래공간기획관	1	3	8	4	17,844	15,264	2,581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7	54,723	64,700	△9,977
기술심사담당관	1	2	4	4	2,527	2,157	370
안 전 총 괄 실	1	11	16	31	1,296,402	1,294,535	1,868
주 택 정 책 실	1	12	21	31	3,427,579	4,202,399	△774,820
도 시 계 획 국	1	6	6	9	25,483	22,753	2,730
균 형 발 전 본 부	1	11	17	18	1,410,971	1,667,943	△256,973
푸 른 도 시 여 가 국	1	13	18	40	362,902	515,398	△152,495
물 순 환 안 전 국	1	3	4	8	263,291	222,485	40,806
인 재 개 발 원	1	1	3	4	19,084	17,434	1,650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1	6	1,325,704	1,634,604	△308,901
미 래 한 강 본 부	1	2	6	10	129,189	124,420	4,770
서울역사박물관	1	1	3	5	16,843	15,210	1,632
시 립 미 술 관	1	1	6	4	18,044	19,855	△1,811
의 회 사 무 처	1	3	27	9	37,361	34,518	2,844
감 사 위 원 회	1	6	11	8	2,119	2,336	△21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3	621	545	76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6	25,867	22,388	3,479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첨부서류, p.151 재구성

3) 참여예산

- 참여예산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23년도부터 **시민속의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시민제안형예산**중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광역단위 사업'은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3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개선 현황

구분	2021	2022	2023년	2024년
광역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기획제안형	광역제안형	광역제안형
지역	구 단위계획형 동 단위계획형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 (자치구 자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486('23. 2.28) “2023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구성

-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3년까지는 자치구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구제안형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4년도 예산안에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4년도 참여예산은 총 26개 사업, 97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시민참여예산 유형인 광역제안형 사업은 73억원(16개 사업)을 편성하고 그 외 청년자율예산을 24억 2,700만원(10개 사업)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5〉 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4년도 예산안		'23년도 본예산		증감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계(①+②)	26	9,727	17	9,344	9	384
①시민참여예산	16	7,300	5	2,250	11	5,050
②청년자율예산	10	2,427	12	7,094	△2	△4,666

- 그러나 청년자율예산의 경우 11월 1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2024년 청년자율예산 투표”를 실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청년자율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부서가 투표 결과를 예단하여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제출한 이후 마치 청년들의 투표로 예산안이 제안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청년 “자율”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로 판단됨
- 또한,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이 투표자가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할수 있어 사업선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36〉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투표 안내

2024년 청년자율예산에 투표해주세요!

● 투표취지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에서 제안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에서 의결한 제안사업은 10개입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4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투표기간: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 ~ 11월 15일(수) 오후 6시 까지
- 투표방법: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공감 가는 정책과제 3개에 투표
- 문 의: 02-2133-4317(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엠보팅 시스템 ('23.11. 8)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4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77개 세부사업, 8,114억 8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7〉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2 0 2 3 년 도 예 산 액	명시이월 요청액 (2023→2024)	2 0 2 4 년 도 예 산 액
총	계	77	(X624,794) 1,793,323	(X379,104) 811,408	(X211,937) 988,610
	일 반 회 계	34	(X32,462) 197,071	(X5,581) 40,218	(X21,015) 133,450
	특 별 회 계	43	(X592,331) 1,596,249	(X373,521) 771,187	(X190,921) 855,156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3	(X46,764) 231,461	(X25,199) 39,782	(X25,600) 297,277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4	(X720) 81,789	(X503) 17,915	(X-) 122,891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	(X3,250) 7,495	(X3,250) 3,480	(X3,500) 7,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7	(X520,483) 959,900	(X331,549) 590,678	(X131,837) 209,53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4	(X21,084) 280,832	(X13,020) 99,354	(X29,954) 202,612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3	(X30) 34,772	(X-) 19,978	(X30) 15,841

5)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 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19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41조 9,484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재정 규모**를 48조 3,897억원으로 전망한 바,

-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76조 5,170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35조 3,034억원으로 전망하며, **특별회계**도 총 재정 규모를 65조 4,316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13조 863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재정규모(총계규모)^{주1)}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도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규모	비중	증가율
계	503,272	457,230	470,349	482,868	496,687	512,350	483,897	100.0	2.9
일반회계	361,880	330,554	339,098	341,213	364,339	379,966	353,034	73.0	3.5
특별회계	141,391	126,676	131,251	131,656	132,349	132,384	130,863	27.0	1.1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3.11), p.16 재구성

○ **세입전망**의 경우, 총 규모 241조 9,484억원, 연평균 규모 48조 3,897억원으로 연평균 2.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지방세수입**의 경우, 총 규모 128조 2,704억원, 연평균 규모 25조 6,541억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2.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세외수입**의 경우, 총 규모 22조 7,201억원, 연평균 규모 4조 5,440억원으로 연평균 0.7%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이전재원**의 경우, 총 규모는 57조 5,197억원, 연평균 규모는 11조 5,039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총 규모 33조 4,384억원, 연평균 규모 6조 6,877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39〉 세입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규모	비중	증가율
계	2,419,484	457,230	470,349	482,868	496,687	512,350	483,897	100	2.9
지방세수입	1,282,704	242,352	249,096	256,243	263,667	271,345	256,541	53.0	2.9
세 외 수입	227,201	44,668	45,833	44,944	45,791	45,965	45,440	9.4	0.7
이 전 재 원	575,197	105,423	111,501	115,021	117,797	125,455	115,039	23.8	4.4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334,384	64,787	63,919	66,660	69,433	69,585	66,877	13.8	1.8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3.11), p.18 재구성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241조 9,484억원, 연평균 규모 48조 3,897억원으로 전망하고
- 회계 간 내부거래(총 24조 3,196억원, 연평균 4조 8,639억원)를 제외한 순계규모 총 217조 6,290억원, 연평균 규모 43조 5,258억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한 것임

〈표 2-40〉 세출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규모	증가율
총 계 규 모	2,419,484	457,230	470,349	482,868	496,687	512,350	483,897	2.9
회 계 간 전 출	243,196	45,105	47,346	45,516	51,586	50,643	48,639	2.9
순 계 규 모	2,176,290	412,126	423,003	445,101	445,101	461,707	435,258	2.9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3.11), p.22 재구성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의 경우, 순계규모(217조 6,290억원) 중 행정운영경비(11조 1,139억원)와 재무활동(15조 1,50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총 191조 3,649억원으로,

- ①**사회복지** 89조 9,470억원(41.3%), ②**자치구지원** 33조 9,132억원(15.6%), ③**교육청지원(법정의무)** 19조 9,375억원(9.2%), ④**공원·환경** 11조 3,601억원(5.2%), ⑤**도시안전** 9조 8,543억원(4.5%) 등으로 배분 계획한 것임

〈표 2-41〉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주1)}

(단위 : 억원, %)

구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순계규모	2,176,290 (100)	412,126 (100)	423,003 (100)	434,353 (100)	445,101 (100)	4461,707 (100)
사 업 비	1,913,649 (85.9)	361,669 (87.8)	370,929 (87.7)	380,201 (87.5)	392,445 (88.2)	408,405 (88.5)
사 회 복 지	899,470 (41.3)	163,531 (39.7)	169,765 (40.1)	177,639 (40.9)	187,776 (42.2)	200,759 (43.5)
도 로 · 교 통	92,566 (4.3)	22,985 (5.6)	19,740 (4.7)	17,059 (3.9)	16,518 (3.7)	16,264 (3.5)
공 원 · 환 경	113,601 (5.2)	22,089 (5.4)	22,544 (5.3)	23,811 (5.5)	22,424 (5.0)	22,733 (4.9)
도 시 안 전 관 리	98,543 (4.5)	17,301 (4.2)	19,343 (4.6)	20,509 (4.7)	21,102 (4.7)	20,288 (4.4)
문 화 관 광	46,186 (2.1)	8,766 (2.1)	9,248 (2.2)	8,597 (2.0)	9,269 (2.1)	10,306 (2.2)
산 업 경 제	47,289 (2.2)	8,496 (2.1)	9,716 (2.3)	9,685 (2.2)	9,916 (2.2)	9,476 (2.1)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비	22,568 (1.0)	3,558 (0.9)	5,335 (1.3)	4,731 (1.1)	4,438 (1.0)	4,506 (1.0)
일 반 행 정	48,626 (2.2)	10,185 (2.5)	9,333 (2.2)	9,612 (2.2)	9,658 (2.2)	9,838 (2.1)
자 치 구 지 원	339,132 (15.6)	64,888 (15.7)	65,812 (15.6)	67,601 (15.6)	69,455 (15.6)	71,376 (15.5)
교 육 청 지 원 (법 정의 무)	199,375 (9.2)	38,433 (9.3)	38,881 (9.2)	39,741 (9.1)	40,675 (9.1)	41,645 (9.0)
예 비 비	6,293 (0.3)	1,437 (0.3)	1,212 (0.3)	1,216 (0.3)	1,214 (0.3)	1,214 (0.3)
행정운영경비	111,139 (5.1)	21,534 (5.2)	21,937 (5.2)	22,247 (5.1)	22,551 (5.0)	22,870 (5.0)
재 무 활 동	151,503 (7.0)	28,921 (7.0)	30,138 (7.1)	31,904 (7.3)	30,106 (6.6)	30,434 (6.6)

※ () 안의 수치는 전체 순계규모 대비 분야별 자원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3.11), p.36 재구성

- 관련 조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 수립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지난 '22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의견수렴의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8개 분야, 총 4문항에 대해 투표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총 3,04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625명이 관련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민주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위하여 '23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시민 의견 표본수(3,048명)가 과소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기후예산제는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기후예산제)’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국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개정안은 '21년 7월에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어 현재 예산안·결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으나,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24년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2024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계획’에는 기존 대상인 “단년도 10억원 이상 사업”에 “다년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24년도 기후예산은 '23년도보다 38개 사업, 1,310억 6,500만원 증가한 247개 사업, 3조 2,526억 4,600만원으로 확인됨

〈표 2-42〉 기후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제출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47	3,252,646	209	3,121,581	131,065	4.2
예산	238	3,203,098	201	3,091,116	111,981	3.6
일반회계	96	806,461	77	529,547	276,913	52.3
기타특별회계	126	2,138,313	122	2,546,864	△408,551	△16.0
공기업특별회계	16	258,324	2	14,705	243,619	1656.7
기금	9	49,547	8	30,464	19,083	62.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16016 ('23.11.23)

- 기후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감축사업 1조 7,408억 9,400만원(95개 사업), 배출사업 1조 174억 9,700만원(109개 사업), 혼합사업 4,942억 5,300만원(43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3〉 기후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사업	2024년도 제출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47	3,252,646	100.0	209	3,121,581	100.0	131,065	4.2
감축사업	95	1,740,894	53.5	85	1,471,197	47.1	269,697	18.3
배출사업	109	1,017,497	31.3	95	1,251,571	40.1	△234,073	△18.7
혼합사업	43	494,253	15.2	29	398,812	12.8	95,441	23.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16016 ('23.11.23)

- 기후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22개 실·본부·국에 24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기후환경본부 37개 사업(5,071억 2,300만원), 푸른도시여가국 29개 사업(817억 6,100만원), 도시교통실 28개 사업(9,486억 8,100만원), 재난안전관리실 29개 사업(2,31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기후예산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4〉 실·본부·국별 기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명	2024년도 제출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47	3,252,646	100.0	209	3,121,581	100.0	159,280	5.1
여성가족정책실	8	57,968	1.8	7	59,773	1.9	△1,805	△3.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	43,693	1.3	6	118,174	3.8	△74,480	△63.0
미래청년기획단	1	1,550	0.0	1	15,300	0.5	△13,749	△89.9
소방재난본부	5	27,213	0.8	3	43,139	1.4	△15,926	△36.9
경제정책실	8	38,461	1.2	7	63,242	2.0	△24,780	△39.2
복지정책실	11	58,169	1.8	11	66,003	2.1	△7,834	△11.9
도시교통실	28	948,681	29.2	28	867,206	27.8	81,474	9.4
기후환경본부	37	507,123	15.6	36	315,357	10.1	191,765	60.8
문화본부	12	70,835	2.2	15	95,073	3.0	△24,238	△25.5
관광체육국	8	28,347	0.9	4	17,520	0.6	10,826	61.8
평생교육국	1	3,756	0.1	3	14,234	0.5	△10,478	△73.6
시민건강국	6	28,074	0.9	3	16,953	0.5	11,121	65.6
미래공간기획관	2	7,611	0.2	-	-	-	7,611	순증
디자인정책관	1	1,806	0.1	1	1,578	0.1	227	14.4
재난안전관리실	29	231,950	7.1	20	283,574	9.1	△51,623	△18.2
주택정책실	14	172,603	5.3	23	319,809	10.2	△147,205	△46.0
균형발전본부	6	47,461	1.5	3	58,111	1.9	△10,650	△18.3
푸른도시여가국	29	81,761	2.5	24	85,801	2.7	△4,039	△4.7
물순환안전국	11	53,093	1.6	4	22,905	0.7	30,187	131.8
도시기반시설본부	8	564,214	17.3	7	633,322	20.3	△69,107	△10.9
미래한강본부	7	57,371	1.8	3	24,497	0.8	32,873	134.2
상수도사업본부	9	220,896	6.8	-	-	-	220,896	순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16016 ('23.11.23)

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4~2028)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는 바,

 - '23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건 인쇄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 관련 기준은 '24년도 예산편성 기준의 보완사항으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서울시는 '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공유재산 가액을 '22년 12월 기준, 135조 1,626억원으로 토지(75조 6,095억원), 건물(8조 9,881억원), 기타재산(45조 700억원), 건설중인 재산(5조 4,950억원)으로 제출됨

〈표 2-45〉 서울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 천㎡, 억원, %)

구분		수량	면적 (천㎡)	재산가액(억원)	비율(%)
합	계	14,836,102	126,835	1,351,626	100
토 지 (필지)	소 계	57,560	106,434	756,095	55.9
	대	11,202	4,230	112,652	8.3
	전	2,646	1,974	6,614	0.5
	답	1,849	1,148	5,093	0.4
	임 야	4,187	21,283	28,857	2.1
건 물 (동·호)	기 타	37,676	77,799	602,879	44.6
	소 계	69,989	13,277	89,881	6.7
	사 무 소	819	1,732	11,720	0.9
	주 택	66,134	7,013	44,574	3.3
기 타 재 산	기 타	3,036	4,532	33,587	2.5
	소 계	14,708,315	7,124	450,700	33.3
	입 목 죽(주)	3,931,409		2,175	0.2
	공 작 물(점)	155,783		264,305	19.5
	기계기구(점)	20,616		8,316	0.6
	선 박(척)	43		61	0.0
	항 공 기(대)	4		216	0.0
	지식재산권(건)	1,081		0	0.0
	유 가 증 권(주)	10,598,039		174,426	12.9
	용 익 물 권(건)	826	7,124	1,039	0.1
	회 원 권(건)	514		162	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2028 서울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3. 9)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홍보기획관

□ **시민청 운영** (사업별설명서 p.39)

- 동 사업은 시민청이 서울시 대표 소통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을 하고자 **사무관리비** 1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62
사 무 관 리 비				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시민청 운영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부가가치세 등) ◦ 서울책방 운영 				1,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부가가치세 등) 				312 376 177 184
공 공 운 영 비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67
시 설 비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산시민청 임차공간 원상복구 공사 				55

- 사업부서는 삼각산시민청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여 삼각산시민청 임차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 원상복구 공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누락한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임차료 부족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세부사업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의 경우, 서남권, 동북권 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 복구비를 편성요청하며 공사기간(2개월)분의 임차료를 편성요청하고 있고,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의 경우에도 공간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편성요청하며, 임차료 산정시 공사기간(4개월)을 포함하여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은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편성요청하며 임차료 산정시 공사기간(2개월)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하였고,
 -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운영** 사업은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운영 종료에 따른 사후조치로 5개월간 임차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등 사후조치를 하고자 **시설비**와 공사기간 분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하고 있음
- 사업부서(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임차료를 지출할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의 전용·변경 등을 통해 임차료를 충당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공사기간중 소요될 것이 분명한 임차료를 누락한 것은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지 않은 사례일 수밖에 없고, 예산총괄부서(예산담당관) 또한 사업부서의 요구를 부실 검증한 사례로 동일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2-47〉 2024년도 예산안중 원상복구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공사기간	통계목	소요예산
시민청 운영	3개월	시설비	55
		사무관리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개월	시설비	40
		사무관리비	23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4개월 (이전으로 인한 원상복구 및 신규조성)	시설비	100
		사무관리비	105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2개월	민간위탁사업비	80
		사무관리비	22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운영	5개월	시설비	100
		사무관리비	98

□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별설명서 p.166)

○ 동 사업은 서울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서울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등을 하고자 33억 8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중 서울브랜드총괄관 국외여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 현행 관련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사유로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여비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요예산중 민간인국외여비(2,000만원)의 편성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19일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관련법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법정결시한까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58)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출연금 168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17,484	
공	공	운	영	비	25
	◦ 재해복구 공제 보험료 - 25,842,000원			25	
출		연	금	17,458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17,458,952,000원			17,458	
	※ 남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신규 추진(약 3억원)				

- 출연금중 **남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남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중 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로 협의 완료하여 지원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난자동결 시술 비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울시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위탁이 아닌 출연금에 포함시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이 아닌 위탁사무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출연기관의 고유사무와 위탁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없이 출연금으로 편의적인 편성을 한 결과로 사료되어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나,

-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시점에서 동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수정한다고 하여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는 출연기관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할 예산과목이 없어 출연기관을 통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 및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출연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3년도 본예산안중 **안심소득 운영** 관련 예산(100억 1,000만원)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①재단 출연금 편성 근거 미비, ②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통계목) 부재 등으로 '24년도에는 서울시의 본예산(안)중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을 신설(150억원)요청하여 제출하였음

○ 관련 법령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지난 서울시 제1회 추경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중요 복지증진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업별설명서 p.97)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2,300만원을 포함한 1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사무관리비에는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비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2-49〉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비의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출내용	예산안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비 계	24,960
◦ 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 9명 × 6회)	16,200
◦ 조사보고서 전문가 자문비 (20만원 × 1명 × 15회)	3,000
◦ 외부전문가 조사비 (30만원 × 3명 × 5회)	4,500
◦ 외부회의실 대관료 (2만 1,000원 × 20시간 × 3회)	1,260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비(2,400만원)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 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원, ② 조사보고서 전문가 자문비 300만원, ③ 외부전문가 조사비 400만원, ④ 외부회의실 대관료 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1,600만원)의 경우, 회당(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서울시 규칙을 위반하는 편성사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별설명서에 “참석수당”으로 명시된 소요예산(1,600만원) 중에는 일당 20만원의 **참석수당**과 10만원의 **심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규칙에 따른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된 것이며, **참석수당**(일당 20만원)과 **심사수당**(일당 10만원)을 일괄하여 “참석수당”(일당 30만원)으로 오기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 관련 조례와 규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인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사업별설명서에 “참석수당”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의회 심사과정에서야 “참석수당”에 심사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후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별설명서 p.181)

- 동 사업은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성매매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민간위탁금 등 8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8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사업추진 				3
민간위탁금				8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12명) 479 ◦ 운영비 90 ◦ 사업비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활동가 운영(2명)(신고검증, 현장조사지원) 3,075,416원*2명*12개월 73 -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모니터링 교육, 매뉴얼 제작, 우수활동가 인센티브 등) 750,000원*12개월 9 -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아웃리치, 사례관리, 경찰조사동석 등) 1,416,666원*12개월 17 - 불법 성산업 감시(신고·고발, 플랫폼운영, 인식개선 등) 1,487,500원*12개월 17 -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교육평가, 네트워크 등) 133,333원*15회 2 - AI 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비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 경비 33,483,000원*1식 33 ▷ 시스템 개발 인건비 2,031,250원*4명*8개월 65 ▷ GPU 서버 호스팅 대여 1,280,000원*4개*11개월 56 ▷ VPN 장비 구매 1,800,000원*1식 18 ▷ Serp API Big Data 구매 350,000원*10개*12개월 42 				

- 민간위탁금(8억 8,700만원)중 편성요청된 AI 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비(1억 9,800만원)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별설명서 p.213)

- 동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15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510				
사	무	관	리	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2,000,000원*2회 			4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서포터즈 운영 4,700,000원*10개월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4,000,000원*10개월 			4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1,412				
	- 인건비			635				
	- 사업비			668				
	- 운영비			107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기구입비 등 7,221,000원*1식 			7				

- 동 사업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14억 1,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바,

- 만약 해당 위탁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일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이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조례의 경우 다른 위탁유형의 근거가 없어 동 위탁사업비의 편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별설명서 p.217)

- 동 사업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7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소요예산 4억 4,6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5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77				
사	무	관	리	비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피해자 안심동행 서비스 216,500천원 ◦ 스토킹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5,000,000원*1식 ◦ 자문회의 및 심사 수당 10,000천원 			216 5 1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 - 인건비(6명) 271,307,000원*1식 -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비, 법률지원비, 이주비 등 155,000,000원*1식 - 운영비 20,000,000원*1식 			446 271 155 2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100
(자	체	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5,000,000원*4개소 			10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바,
 -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수정한다고 하여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로부터 예산 편성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해당 조례를 유연히 해석하는 경우라 하여도 해당 조례에는 다른 위탁의 근거는 없어 동 위탁사업비의 편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이돌봄 지원(자체)** (사업별설명서 p.363)

- 동 사업은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등·하원 및 병원 동행 시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아이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금 67억 7,200만원**을 포함한 69억 5,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959											
사	무	관	리	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홍보물 콘텐츠 제작 20,000,000원 			20											
민	간	위	탁	금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종사자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평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모니터링 			99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6,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지원비 - 33,600시간*1,000원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 종일제 1,920,000시간*1,000원 - 시간제 2,400,000시간*500원 			3,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특화교육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조정수당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전담 돌보미 사업 - 돌보미 활동비 800명*100,000원*12개월*0.5 - 돌보미 교육수당 800명*8시간*9,900원(교육수당)*0.5 - 교육운영비 25개구*(2회*8시간*강사비 100,000원+사무용품 등 500,000원)*0.5 			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원 돌보미 지원 - 돌보미 활동비 3,700명*70%*월80,000원*12개월*0.5 - 돌보미 교육수당 3,700명*70%*2시간*9,900원(교육수당)*0.5 			1,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동행 돌보미 사업 - 돌보미 활동비 3700명*25%*월30,000원*12개월*0.5 - 돌보미 교육수당 3,700명*2시간*9,900원*0.5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인력 운영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채용 인건비 25개구*1명*38,950,000원*50% 			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사업 - 826명*6,662원*105%*월50시간*5개월*50% 			722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지원 언론홍보 30,000,000원 			3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업 신설 및 확대를 위해 '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나, 협의 결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 유사목적의 사업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관련 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안전 심사 결과와 연동하여 소요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관련 기준을 통해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한 바,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4〉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p>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p> <hr/> <p>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p> <p>※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p> <p>※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p>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사전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미이행한 사업

-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418)
-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421)

○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과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공모결과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타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400만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 3,6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 하고,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9,700만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억 6,4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5〉 다함께 돌봄사업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50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4
	◦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교육청 교부금)			336
	◦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시비)			168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99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7
	◦ 학교돌봄터 인건비(교육청 교부금)			664
	◦ 학교돌봄터 인건비(시비)			332

- 관련 법령 등은 ①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②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③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국가, 교육청, 자치구가 그 재원을 25:25: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는 국가와 교육청의 재원을 수납처리 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 '23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가 '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0:25:25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 바,
 - 편성요청된 사업은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 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①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전출하는 재원(교육청 교부금)에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② 관련 법령 별표에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어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과 **다함께 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교육청의 '24년도 예산안에는 학교돌봄터 지원을 위해 서울시로 전출하는 예산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교육청의 일반재원이기에 동 사업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관기관의 재원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국고보조사업”의 경비부담과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표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명시되어 있으나,
 - 동 규칙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편성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 규칙을 근거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일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언하는 것은 관련 규칙을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한 사례로서 자의적 확대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한 법정 사전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편성사례에 해당되어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사업별설명서 p.855)
-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9)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는 금년도(5억 6,300만원)와 동일한 5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예산과목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금년도(5억 6,000만원)와 동일규모인 5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사무관리비도 금년도(300만원)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6〉 소요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주1)}	증감액
계				563	563	-
사 무 관 리 비				3	3	-
◦ 공모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3	3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60	560	-
◦ (지정주제) 행복한밥상				285	285	-
◦ (지정주제) 건강한밥상				75	75	-
◦ (지정주제) 짙글빙글사랑방				200	200	-

※ 주1) 2023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증감조정이 없어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 관련 법령 등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 중 '22년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여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등급이 “미흡”임에도 금년도(5억 6,000만원)와 동일한 규모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사업의 추진성과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은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포함한 26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행사운영비는 1인가구 영상 토크쇼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예산(2,000만원)과 동일규모로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기 추진된 행사성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서도 등급개선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통해 '23년도 중 '22년도에 기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24년도 예산 편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기 추진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이나 행사운영비를 금년도 최종예산(2,000만원)과 동일규모로 편성요청함으로써 행사성사업의 추진성과와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사례로 판단됨
- 사업부서로서는 행사를 추진한 '22년도에도 사회재난인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토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나, '22년도 중에는 사회재난에도 불구하고 행사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추경을 일체 요청하지 않고 평가등급이 ‘미흡’으로 나온 이후에야 부진한 사업추진성과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사회재난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비대면으로는 행사추진이 불가능하였던 다른 행사성 사업들과 비교하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영상토크쇼를 진행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주요재정사업평가 주관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가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를 통보('23.11.13) 받고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예산안 제출기한('23.11. 1)을 경과한 이후이나, 평가주관부서가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나 일몰 등의 구조구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가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6,000만원)과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이 편성요청한 **행사 운영비**(2,000만원)의 경우, 소요예산 중 일부를 감액조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사업추진성과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을 사료됨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p.100)

- 동 사업은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하고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91	
사	무	관	리	비	133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운영			133	
기	타	보	상	금	465
	◦ 창업자금 지원			465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693	
	◦ 골목창업학교 운영			693	

- 관련 법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실무중심의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이 시작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어 별도의 사전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사업의 중복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행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사업별설명서 p.51)

- 동 사업은 만 19세~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흥국 유망 산업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250
	○ 사업 자문 및 심사, 홍보비 등				5
	5,000,000원				
	○ 미래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운영 용역				245
	245,000천원				
	- 사업운영 PM 및 국내교육 등				110
	110,000,000원				
	- 해외 현지 연수 운영(30명)				125
	125,000,000원				
	- 만족도 조사 및 운영평가				10
	10,000,000원				

-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제안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30명을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비 일체, 보험료, 항공료 등 청년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인 바,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정책 실험의 경우도 협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사업 방침의 경우에도 '24년도에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관련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이 제출('23.11. 1)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사전 절차 이행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동 사업의 해외연수 경비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관련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인(사회진입 전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국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 요청한 것일 수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적절한 예산과목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편의적으로 소요 예산을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고,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 사무에 대해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 방식이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 해외 연수를 위한 경비를 포함한 동 사업의 소요 예산액 전액을 사무관리비(일반용역비)로 일괄 편성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체를 사인과의 사적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일 수 밖에 없어 사무관리비(일반용역비)의 편의적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업별설명서 p.86)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별설명서 p.116)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은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금융특강 등을 통해 건강한 재정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상담료 명목인 **기타보상금** 21억 3,200만원을 포함한 27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며

〈표 2-5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728
사무관리비				4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재무상담 기획 및 운영 ◦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 영테크 클래스 운영 ◦ 명사 금융특강 운영 ◦ 전담 사무국 운영 ◦ 이벤트 진행 및 홍보물 제작비 	33 65 24 10 326 20	
공공운영비				67
		◦ 재무상담 시스템 유지보수	67	
기타보상금				2,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영테크 상담료 지급 - 비대면 상담 - 대면상담 	2,132 632 1,5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
		◦ 언론홍보사업	50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선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층에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1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90	
사	무	관	리	비	10
	◦ 청년부채 교육 특화 운영			10	
기	타	보	상	금	180
	◦ 청년부채 특화 상담			180	

- 2개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물론 담당자도 동일한 것 이외에도 사업별 설명서중 ①**사업내용**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로 기재하고 있고, ②**사업목적**도 “청년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일치하며, ③**향후 기대효과** 또한 “서울영테크(재테크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습득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으로 동일하며, ④**사업근거** 까지도 일치하고 있음

- 두 사업의 사업별 설명서는 사업명에 일부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을 중복 편성한 사례로 사료됨

- 다만, 두 사업의 차이점은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사업이 ①**청년자율예산**이라는 것과 ②지원대상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인 것으로 두 사업의 차이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표 2-61〉 영테크 및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별설명서 비교

사업명	사업별설명서		
	구분	기재내용	비고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사업별설명서 p.86~90	사업개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일부 차이
	사업목적	청년 금융교육 및 재무 상담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동일
	사업근거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 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동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4. 1 ~ 2024.12 ·지원대상 : 만19세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사업내용 : 무료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 재무상담 : 재무설계사 자격 보유 상담사 배정 후 청년대상 1:1 정밀 상담 - <u>금융교육 : 청년주거, 생활경제, 투자기초, 지출관리 등 주제별 금융교육 실시</u>	일부 차이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별설명서 p.116~118	사업개요	<u>(청년자율예산)</u>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 <u>부모 부양 또는 부채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재무상담 지원</u>	일부 차이
	사업목적	청년 금융교육 및 재무 상담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동일
	사업근거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청년 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동일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4. 1 ~ 2024.12 ·지원대상 : 만19세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사업내용 : 무료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추진방법 : 재무설계사 자격 보유 상담사 배정 후 청년대상 1:1 정밀 상담 · <u>사업의 주요내용 :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대상 특화 개별상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u>	일부 차이

※ 자료근거 : 미래청년기획단,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86~90, p.116~118

- 사업부서는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이 “청년 자율예산”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서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 관련 기준은 신규사업은 지난연도와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구조화 전에 예산담당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에 대해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 중복 편성된 사례일 수밖에 없어 두 사업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자율예산제는 정책결정과정중 중요한 절차인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사업부서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고 시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제도이나

〈표 2-62〉 청년자율예산제 프로세스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정책의제 도출	매년 4월 ~ 5월
분과숙의·사업계획 논의	매년 5월 ~ 6월
사업부서 협의	매년 6월 ~ 7월
예산안 조정 (사업부서)	매년 6월 중순 ~ 7월
시민투표 예산 확정	매년 8월 ~ 9월
사업부서, 예산부서간 협의	매년 9월 ~ 10월
시의회 예산심의	매년 11월 ~ 12월

- '24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10개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시점인 11월 1일에서야 비로소 시민투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이라는 사업 제안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표 2-63〉 연도별 청년자율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편성시기	예산안 ^{주1)}		온라인 대시민 투표 시기	투표결과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2024	10	2,427	11. 1 ~ 11.15	미정	미정
2023	12	7,094	9. 2 ~ 10. 2	12	7,700
2022	10	8,444	8. 3 ~ 8.29	11	14,400
2021	18	26,493	8. 3 ~ 8.29	24	32,400

주1) 매년 11월 1일, 의회 심의·의결 전 서울시 제출 시점 기준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기획행정소식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533 ('23.11.15)

5) 기획조정실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p.203)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요예산(5,100만원)중 기타보상금 3,9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1
사 무 관 리 비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 답례품 배송비 				0.3
기 타 보 상 금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 답례품 구입비 				39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비(한국지역정보개발원) 				11

- 관련 법령 및 조례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답례품은 동법 시행령과 해당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한도(100분의 30)내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년도에는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답례품 제공 사무 일체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하였으나, '24년도에는 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 추진비(1,800만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출계획하고, 답례품 지원은 여전히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답례품 지급은 기부금에 대한 반대 급부적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금 수입과 연동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은 해당 기금에 수입계획하고, 지출에 해당하는 답례품 지급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 바, 답례품 지급도 기금사업으로 지출계획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기부금 수입을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 편성요청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중**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동법 시행령과 해당 조례에는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 수입(기부총액)과 비교하여 답례품 소요예산이 지원 가능한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료되어 **기타보상금**은 법정 한도를 고려하여 감액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6) 경제정책실

□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9)

- 동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서울강서캠퍼스)의 시설 운영비와 훈련생에 대한 식비 등을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2억 5,100만원)를 포함한 5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표 2-6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40	
공	공	운	영	비	4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4
		4,158,000원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51	
	◦	교육훈련비 지원			251
	-	시설운영비 지원			228
		228,513,000원			
	-	훈련생 식비 지원			23
		128명*3,300원*55일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284	
	◦	시설 개보수비 지원			284
		284,564,000원			

- 사업별설명서중 “2024년도 추진일정”에는 시설 사용료 지원기간을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제출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사료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고 실제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할 경비까지 편성요청 하고 있어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

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중 '24년도 집행분을 재산정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6〉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40	
시설 사용료 지원	2024.04~2025.04	228	시설운영비 지원
훈련생 중식비지원	2024.03~2024.12	23	격월 청구에 의거 식비 지원
옥상 방수공사비	2024.04~2024.04	284	시설 보수 비용(방수공사) 지원
공유재산 보험료	2024.03~2024.03	4	공유재산 보험료 납부

※ 자료근거 : 경제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51

□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사업별설명서 p.228)

- 동 사업은 서울창업센터(관악)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 5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91	
공	공	운	영	비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보험료 550,000원 			0.5	
민	간	위	탁	금	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4명) 198 ◦ 시설운영비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구입비 10 노트북 2대, 냉난방에어컨 1대 10,000천원 - 임차료 46 - 시설관리 유지보수 27 - 관리용역비 35 - 공공 요금 및 제세 60 - 일반수용비 12 - 업무추진비 7 - 일반관리비 11 ◦ 사업비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산학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29 - VC·AC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44 - 스타트업 성장지원 70 - 관악S밸리 활성화 추진 사업 37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된 자산구입비(노트북, 냉난방에어컨)는 자본형성 적 경비에 해당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상산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60)

- 동 사업은 총무로 영상센터 운영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 29억 5,1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951	
사	무	관	리	비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진흥위원회 운영 등 1,650천원*1회 ◦ 총무로영상센터 임차료 16,000천원*2회 			1 32	
민	간	위	탁	금	2,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창작공간 운영 366,154,250원*4회(분기별) ◦ 총무로 영상센터 운영 80,929,250원*4회(분기별) ◦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93,062,500원*4회(분기별) ◦ 민간위탁 인건비 등 공공운영비 89,396,000원*4회(분기별) 			1,464 323 772 357	

- 민간위탁금중 독립영상 활성화 지원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장·단편 독립영화를 선정(25편 내외)하여 제작비를 차등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작비 및 시사회 지원 등을 위해 7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기준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면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시 직접 추진 사업(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독립영상 활성화 지원**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과목의 부적정 편성 사례**

-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사업별설명서 p.723)
- **기관연계 및 홍보** (사업별설명서 p.739)

○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은 시립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800만원을 포함한 2억 8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
◦ 셔틀버스 운전 기간제 및 촉탁직 근로자(1인) 임금				158
사무관리비				14
◦ 공무원 및 촉탁직 근로자 피복비 (300,000원×48인)				14
공공운영비				14
◦ 공무원 및 촉탁직 근로자 건강검진비 (300,000원×48인)				14
공무원교육여비				1
◦ 공무원 및 촉탁직 근로자 교육여비 (40,000원×48인)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5
특정업무경비				13
◦ 대민활동비 (50,000원×23인×12개월)				13

- 관련 기준은 공무원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은 ①인건비의 경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인건비 외 기타 경비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편성과목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촉탁직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기타 비용(피복비, 여비 등)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상의 서울시립과학관의 공무원 정원은 47명이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예산안 산출근거에 촉탁직근로자 1명의 보수를 편성하고 있어 시립과학관의 공무원 및 촉탁직 정원은 총 48명으로 사료됨
 - 그러나 공무원·촉탁직과 관련된 피복비, 여비 등을 예산과목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바, 촉탁직 근로자의 피복비, 여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관연계 및 홍보**는 시립과학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0	
사	무	관	리	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관 안내 리플릿 추가 제작 (5,000,000원×2회) ◦ 홍보물 제작 (200,000원×50회) ◦ 홍보관련 물품 구입 (20,000원×500개) ◦ 미디어 등 홍보 (30,000,000원×1회) 			10	
				10	
				10	
				30	

○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TV, 버스정류장 광고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시립과학관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관련 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을 기존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광고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과목의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사료됨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775)

○ 동 사업은 도봉구 창동에 연면적 7,405㎡ 규모(지하2층~지상4층)로 조성 중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억 5,200만원을 포함한 33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의 “2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①'23년 말 완공되어 ②'24년 3월까지 전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③ 4월 시범운영을 한 후, ④5월 개관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운영비를 산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건립완공 시점을 '23년 상반기로 예측하여 하반기부터 개관 및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23년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예산으로 2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가 지연되어 '23년 10월 말 현재 해당 예산의 1.2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실 소요 예산만 요청하도록 한 바,

- '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공사와 관련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완공 및 개관시기를 재검토하여 시설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편성요청된 것인지 재확인 후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홍보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 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해 부적정한 예산과목을 편성요청한 사례로 판단됨

〈표 2-7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381
기 관 제 근 로 자 등 보 수				96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연구보조원) (2,767,500원×3인×9개월)			7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고객 관련 업무종사자) (2,767,500원×1인×8개월)			22
사 무 관 리 비				1,652
	○정보통신망 라이선스 구매			21
	○자원봉사자 운영 소모품, 입장권 제작 구매, 안내 리플릿 제작 등			15
	○전시연계프로그램 재료비			36
	○체험프로그램 강사로 (200천원×64회×8개월)			102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과학관협회 등 관련협회 가입비 등			18
	○전시실 운영 용역비 (5,323천원×15인×10개월)			798
	○미디어사파드 운영			300
	○기획전시 개최 (150,000천원×1종×2회)			300
	○기념품 제작(10,000천원), 홍보물 제작 설치 배포(2,000천원×3회)			16
	○관내시 아트 구독(880천원×8회)			7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 등			10
	○과학관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200천원×7인×3회)			4
	○특별강연 프로그램(600천원×3회), 체험실 운영물품 구입(300천원×8월)			4
	○홈페이지 SNS 연계 서비스, 인공지능체험 유료서비스 구독			5
공 공 운 영 비				1,254
	○과학관 청소용역(2,800천원×9인×12개월), 경비용역(3,200천원×4인×12개월)			455
	○전시실 유지보수비(1,000천원×23종×10개월), 체험실기자재 유지보수(500천원×9월)			234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8,000천원×1년), 홈페이지 유지관리			81
	○중대재해 예방조치,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청사 소독, 무인경비시스템, 소모품			481
행 사 운 영 비				75
	○개관식(60백만원), 어린이날 과학문화 행사(10백만원), 방학 특별문화 행사(5백만원)			7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5
	○전시 콘텐츠 기업기관 업무협의 간담회(3백만원), 대회협력 간담회(2백만원)			5
기 타 보 상 금				12
	○자원봉사자 활동비			12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285
	○고소작업대, 북트럭 및 서가, 상설전시 전시물 보강, 교육실 기자재			285

7) 복지정책실

□ 가족돌봄청년 인식확산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 (사업별설명서 p.37)

- 동 사업은 지역 내 포럼, 콘퍼런스,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2
사 무 관 리 비				72
	○ 홍보비용			45
	○ 참석수당 등 (1,700천원×6회)			10
	○ 회의운영비			16
행 사 운 영 비				30
	○ 자전거 이용 안전 기반 조성 시책추진			30
기 타 보 상 금				10
	○ 공모전 시상금 (10,000천원×1회)			10

- '22년 10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업부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바,
 - 소요예산중 기타보상금(1,000만원)은 가족돌봄청년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발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요청 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기준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정하고 있어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

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조례에는 공모전 개최를 통한 시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에서는 기타보상금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정하고 있어 “등”에 사업부서의 방침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 제출 시점 이후인 '23년 11월 7일 관련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나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시상금품에서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의 방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사업부서의 적극성은 이해되나 법령의 내용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사례는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사업별설명서 p.129)

○ 동 사업은 서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봉사자, 후원자, 종사자나 장애극복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시시민상(복지상)을 시상하고자 사무관리비 3,500 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5	
사	무	관	리	비	35
	○수당 등 위원회 운영			13	
	- 복지분야 심사 수당 (450천원×12인)			5	
	- 장애인분야 심사 수당 (300천원×12인)			3	
	- 심사자료, 위원회 개최 등 (25천원×20권×4종×2회)			4	
	○상패 등 시상비용			12	
	- 시상식 개최 준비 등			5	
	- 상패제작 (400천원 × 16개)			6	
	○광고 및 홍보 비용			10	
	- 일간지 광고 (2,500천원 × 4종)			10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주요 일간지 광고 및 홍보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관련 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을 기존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간지 광고비용에 대한 예산과목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167)

○ 동 사업은 소득 격차해소 등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5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취 약 계 층 , 지 방 재 원)			15,000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급여 지급 1, 2단계 1,584가구 안심소득 지급		15,000

○ 동 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심소득 운영** 관련 예산(100억 1,000만원)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①재단 출연금 편성 근거 미비, ②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통계목) 부재 등으로 사업 관리 및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24년도에는 본예산 중 **안심소득 시범 사업 지원**을 신설(150억원)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복지정책실로 사업과 예산 일체를 이관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기준도 사회복지제

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업 신설을 위해 '21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은 사업의 전달체계가 출연기관을 통한 ①출연금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②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한 바, 사회보장 지원사업 전달체계 변경 등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취약계층 사기 예방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263)

- 동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기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포함한 6,9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9
사무관리비				29
		○사기 관련 전문가 간담회 운영		14
		○사기 예방 사례집 제작		1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
		○취약계층 사기 예방 사업 정책 홍보		40

- 사업별설명서상 사업의 주요대상은 수급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사회 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①사기 분야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②사기피해 예방 매뉴얼 제작, ③취약계층 및 사회 초년생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④정책 홍보물, 사기피해 사례 영상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역은 사기 관련 전문가 간담회 운영, 사기 예방사례집 배포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비만 편성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이나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시점('23.11. 1)이 지난 '23년 11월 13일 “취약계층 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됨

〈표 2-76〉 ‘취약계층 사기 예방 사업 추진’ 사업내용

□ 세부 추진계획

- ① 금융·경찰·복지·법률 다양한 분야의 정부-서울시 사기예방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사기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외부기관 협업) 금융감독원, 경찰청, 복지재단, 은행연합회 등 MOU 후 사기 예방위원회 참여, 단계별 협력 추진 ('23.11월~)
 - (시 내부협업) 복지정책실이 총괄하고 실본부국에서 분산되어 추진하는 사기예방 및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체계화

- ② 복지재단 내 ‘서울시 취약계층 사기예방 및 지원센터’ 설립·운영(안)
 - 운영기관 : 서울복지재단 내 설치 ('24년부터 운영 예정)
 - 주요사업 : 사기 피해자 초기대응, 후속지원, 시(市)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강사 지원

- ③ 사기피해 예방 매뉴얼 제작 추진
 - 진화하는 사기범죄 수법과 피해사례, 예방법 소개
 - 온라인 백서 제작, 복지포털 게시로 시민들이 널리 이용 가능토록 보급

- ④ 취약계층 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사기피해 예방 및 대응 법적 근거 마련하여 체계적 계획 및 실효성 확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안심돌봄복지과-18688 ('23.11.13),
“취약계층 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아울러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자 초기대응, 후속지원 및 교육강사 지원”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시 취약계층 사기예방 및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운영할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23년 8월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24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편성요청된 예산으로 취약계층 사기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별설명서 p.359)

- 동 사업은 취약 어르신을 돌보는 수행인력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및 돌봄로봇을 활용하여 취약 어르신에 대한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40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35
시	책	추	진	1
		업	무	
		추	진	
		비		1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원 업무추진
자	치	단	체	4,033
		경	상	
		보	조	
		금		
				○취약어르신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3,388인×480천원)
				- 전담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29인×720천원)
				- 대표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12인×1,080천원)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241인×300천원)
				- 운영비 (폭염, 한파 대비 물품지원 예산, 대표수행기관 운영비 및 특화사업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 기존 기기 재약정 (5,449대×330천원)
				- 운영비 (사업운영비, IoT 현장출동수당)
				○취약어르신 집중돌봄 서비스
				- 기기 보급 (100대×1,000천원)
				- 프로그램 사업비

- 사업내용 중 “AI·반려로봇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는 ’23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일부 자치구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택(宅)에 “임대 또는 구매”의 방식으로 AI·반려로봇을 보급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8〉 ‘AI·반려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 사업내용(’23년도)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은둔·우울,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 사업방식 : 자치구 공모(7개 선정)를 통한 반려로봇 활용 맞춤형 사업 발굴
 - (서울시) 사업 자치구 선정, 예산 교부, 추진 모니터링 등
 - (자치구) 로봇 기기(보급방식 : 임대, 구매 등) 택 내 보급 및 돌봄서비스 제공
- 공모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제안발표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정서 지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로봇 활용한 안심 돌봄 제공
- 사업예산 : 275,000천원(시비 100%)
- 지원예산 : 선정 자치구별 39,200천원 내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6060 (’23. 3. 2),
“2023년 AI·반려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 시행계획”

- 다만, 관련 기준에 따르면 시에서 관할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치구에서 “기기를 보급하는 방식” 즉, 임대인지 구매인지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과목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기기를 보급하는 방식은 ’24년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추후 보급방식을 “구매”로 선택한 자치구가 선발될 시 예산 변경제도를 통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532)

- 동 사업은 학대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남녀 전용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8억 7,500만원을 포함한 14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427	
민	간	위	탁	금	875
	○남아쉼터			439	
	○여아쉼터			435	
시	설			비	551
	○ <u>쉼터 이전 및 리모델링비</u>			551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쉼터 이전 및 리모델링”을 위해 편성요청된 시설비 5억 5,100만원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예산안 제출일('23.11. 1)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3)

- 관련 기준은 예산편성 시 관련 조례가 사전에 제·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복지정책실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제321회 정례회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0〉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의안 제출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회부일	심사예정일
복 지 정 책 실	서 울 복 지 재 단 운 영	'23.10.23	'23.12.19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출연금 733억 5,300만원을 포함한 733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출연금중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이 포함된 바,

〈표 2-8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3,382
사	무	관	리 비	20
	○서울복지타운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
공	공	운	영 비	9
	○서울복지타운 재해복구 공제 가입			9
출	연		금	73,35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3,353

-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시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의안을 예산안에 대한 법정의결시한 이후인 '23년 12월 19일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도시교통실

□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별설명서 p.77)

- 동 사업은 서울권역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도입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억원을 포함한 401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100	
연	구	용	역	비	100
	◦ 사업시행 효과분석 용역			100	
민	간	경	상	사	40,000
	◦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			40,00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조례안의 경우, 금번 정례회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23.10.23)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와 연동하여 소요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4년도 하반기 K-패스로 전환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금년도 50:50에서 '24년도 40:60으로 조정되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복투자 여부 및 유사사업 통합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별설명서 p.112)

- 동 사업은 990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지방보조사업으로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기관에 대해 ①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729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② 노후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60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9,085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72,994
◦ 운영보조금(수입-운영비)				72,994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자 체 재 원)				26,091
◦ 노후시설 교체비용				26,091

- 관련 법령 등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년 7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등급이 '미흡'하여 '24년도에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결정된 것이나,
 - 금번 예산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폐지하기로 결정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를 다시 편성하고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 노후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로 간주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일 수 있을 것이나,

- 사업부서는 편성요청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취지를 고려하여 수시로 집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운용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p.417)

- 동 사업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포함한 2억 3,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8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36														
사	무	관	리	비	172													
	○자전거 홍보 기획 및 홍보물 제작 등			132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4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0									
	○자전거 이용안전 기반조성 시책추진								10									
기	타	보	상	금					3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운영 (13,071원×70명×4개월)								3									
	※ '24년 생활임금 반영하여 산출								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50
	○언론협력사업 추진 등																	50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 및 관련 방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전거 안전지킴이단을 모집하여 서울시 내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게 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전지킴이단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관련 기준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이므로 해당 조례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활동비의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고시에 따른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①서울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②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③ 서울시로부터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은 아닌 바, 활동비 지급을 위한 적정 기준을 재산정하여 편성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기후환경본부

□ 녹색서울실천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121)

- 동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5〉 소요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주1)}	증감액
계				400	4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400	-
		◦ 녹색서울실천사업		400 (20개×2,000만원)	400 (20개×2,000만원)	-

※ 주1) 2023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증감조정이 없어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 동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결과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원단체가 중복되므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의견과 함께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4억원)**는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사료됨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경상사업보조(4억원)**를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법령이 지방보조금 편성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412)

- 동 사업은 28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22억 8,000만원이 소요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8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825
사무관리비				495
		◦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20
		◦ 지역주민 소통협의체 운영		100
		◦ 광역자원회수시설 홍보		250
		◦ 지역주민 여론조사		40
		◦ 입지 지역주민 사업 설명회(환경영향평가 등) 개최		30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25
		◦ 지역주민 소각시설 현장견학 등		3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0
		◦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현대화 홍보		50
시설비				2,280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2,280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23년 10월 수립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용역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2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20개월간 시행할 용역에 대해 용역비(24억 8,200만원)의 91.8%에 해당하는 소요예산(22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사료됨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13년 만의 예산 축소를 직시하면서도 회계연도 중 집행할 수 없는 소요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상황과 이질적인 편성사례일 수 있어 편성요청한 시설비(22억 8,000만원)는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규모를 재산정하여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별설명서 p.487)

- 동 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자 서울시 부담분 2억 8,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4,000만원)를 제외하고, 소요예산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①관광지역은 개당 200만원인 가로 쓰레기통을 7개 관광특구에 15개씩 설치하고, ②일반 보급은 개당 50만원인 가로 쓰레기통을 시·구 50:50으로 매칭하여 28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2-8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86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쓰레기통 설치비 지원 - 관광지역 2,000,000원×7개 관광특구×15개 - 일반 보급 250,000원×288대 				282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업무추진 				4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로 쓰레기통은 개당 50만원이나, 7개 관광특구에 설치할 쓰레기통은 개당 200만원인 바,
 - 설치 지역이 관광특구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디자인 가로 쓰레기통을 보급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쓰레기통의 기본 용도를 고려할 때 쓰레기통의 개당 가격이 200만원인 것은 일반적인 납세자의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부서는 이미 지난 '15년도에도 보라매공원 등 10개소에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 압축기능 등이 있는 스마트형 쓰레기통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당시에도 쓰레기통 2개로 구성된 1세트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산정(1개당 250만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19년 9월, '거리 애물단지'라는 부정적 보도가 기사화된 사례가 있음
- 디자인이 고려된 가로 쓰레기통을 7개 관광특구에 설치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나, 쓰레기통의 가격은 용도에 비례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일반적인 쓰레기통(50만원)보다 고가(200만원)인 쓰레기통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여건과는 상반된 정책일 수 있어 2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관광지역 가로 쓰레기통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담배꽂초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별설명서 p.491)

- 동 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10개씩 편 디자인 담배꽂초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	체	자	200
	치	단	본	
		체	보	
			조	
	○ 편 디자인 담배꽂초 수거함 800,000원×25개 자치구×10개			200

-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사업별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해·화재 등의 사업효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개당 80만원인 담배꽁초 수거함을 자치구별 10개씩 설치하려는 신규사업이나, 자치구별 면적을 고려할 때 10개 내외의 담배꽁초 수거함은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정책홍보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사업과 비교하면, 일반 보급을 위한 쓰레기통을 개당 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담배꽁초 수거함은 편 디자인을 반영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설치비용이 개당 80만원인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쓰레기통(50만원)보다도 담배꽁초 수거함(80만원)을 고가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과 이질적인 정책일 수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청년자율예산 사업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조성**의 경우에는 개당 17만원씩 일반적인 옹기형 담배꽁초 수거함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조성** (사업별설명서 p.497)

-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만원을 포함한 9,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무관리비**(5,000만원)의 경우, 서울시 관할구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문화를 조성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자치단체자본보조(4,000만원)는 자치구가 향아리형 담배꽂초 수거함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0
사 무 관 리 비				50
		◦ 대학연계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문화 홍보 전개		30
		◦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20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40
		◦ 향아리형 담배꽂초 수거함 구입 지원		40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포함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4,000만원)를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로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될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요청한 지방보조금(4,000만원)은 전액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0) 문화본부

□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65)

-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은 한국 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을 제정하여 공모 시상 및 기념 전시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9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세출)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0	
사	무	관	리	비	60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60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유리지공예관이 공예상 운영을 위하여 30년간 총 9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24년도 예산안에 기부금수입 6,000만원이 세입예산안으로 편성요청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은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은 서울시의 기부 심사 없이 기관별 자체 접수 절차를 통하여 지정기탁 금품 접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공예박물관은 '24년 1월, 자체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受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입조치나 세출예산 편성 등을 위해서는 심의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자체 수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증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적정 ('23.11.23)

11) 관광체육국

□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별설명서 p.38)

- 동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축제·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서울관광 홍보단 운영을 통하여 서울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 및 홍보하고자 사무관리비 4억 3,200만원이 포함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72					
사	무	관	리	비	432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작	332				
				○2030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운영	100				
				- 홍보단 관광활동 지원	79				
				· 사업 운영비 (4인×9개월×2,300천원×0.22)					
				· 트립메이트 활동비 (100천원×50인×7개월)					
				· 트립메이트 상금 (6,000천원)					
				· 면접심사, 발대식 교육, 여행자보험, 성과보고서 해단식 등					
				- SNS 등 홍보 마케팅	11				
				- 만족도 조사 등 기타운영비	9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280	
								○환대주간 운영	28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60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7개 특구×80,000천원)	560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에게 활동비 정액 및 인센티브(상금)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민간인에게 경비나 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또는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여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 단계에서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민간인에게 활동비 정액 및 시상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 “활동비”의 경우, 관련 조례상의 시민 자원봉사자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위한 조항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실비형식의 정액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조례에는 민간인에게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광홍보단(트립메이트)에게 활동비 외에 인센티브(상금)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사업별설명서 p.67)

- 동 사업은 여의도공원 잔디광장(영등포구 여의도동 2)에 달모양의 헬륨가스기구를 제작하여 최대 150M(건물 50층) 높이에서 한강중심 야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4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편성한 ①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서울의 달’을 위탁운영 하고자 12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시설비는 ’23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계류식 헬륨가스기구

(28억 2,800만원)와 부대시설(7,100만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표 2-9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135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달' 운영비 - 위탁운영비(서울관광재단) 			1,235
시 설 비				2,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기구 - 계류식 헬륨가스기구 제작 및 설치 등 			2,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 기타 부대시설 제작 및 설치 등 			71

○ 다만,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가스기구, 부대시설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사전발주로 '23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대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의 하나일 뿐 소요예산 편성액을 미리 담보하거나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우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설령 사업부서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회계연도 시작 전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라고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시작전 “발주”하는 것은 위법요인이 없으나,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약”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24년도 예산을 확정된 이후 계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별설명서 p.71)

- 동 사업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MICE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서울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MICE 도시로 만들고자 사무관리비 8억 2,000만원이 포함된 53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362	
사	무	관	리	비	820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개최 (2,000천원×20회)			40	
	○마이스인프라 확충에 따른 운영 활성화 컨설팅			280	
	○국제이벤트 지원 (100,000천원×2회)			200	
	○블레저 관광객을 위한 'PLUS 서울리워드 프로그램' 개발·지원 (20천원×15,000명)			30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4,542	
	○국제회의 지원 (15,000천원×120건)			1,800	
	○전시회 지원			1,270	
	- 1단계 지원금(파일럿) (10,000천원×3건)				
	- 2단계 지원금(차세대 유망) (20,000천원×15건)				
	- 3단계 지원금(국제화) (40,000천원×15건)				
	- 4단계 지원금(대형화) (80,000천원×3건)				
	- 해외전시회 (50,000천원×2건)				
	○전시회 컨설팅 (200,000천원×1식)			200	
	○인센티브 관광 지원 (2,500천원×240건)			600	
	○유니크 메뉴 지원 (5,000천원×5건)			25	
	○기타 운영비, 심사비, 부가세, 수수료 등 (647,000천원×1식)			647	

○ 다만,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 사업별설명서를 검토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제이벤트 개최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23년 6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마이스(MICE)산업의 정의에 “국제이벤트”가 추가된 바,

- 사업부서에는 ①'23년 9월, “국제이벤트 유치·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②'23년 10월,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③ 금년 11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개월간의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국제이벤트 유치전략 및 지원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확인되어

- 현재로서는 포괄비적 성격일 수밖에 없고, 편성요청된 2억원도 국제이벤트 지원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이벤트 유치·지원”을 위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2억원은 '24년 5월 도출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부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국제이벤트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스마트 그린 마이스 기반 구축** (사업별설명서 p.82)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울형 마이스 ESG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50	
사	무	관	리	비	130
	○마이스 ESG 운영 컨설팅 (10,000천원×10건)			100	
	○회의비, 자문료 등 (1,000천원×30건)			30	
기	타	보	상	금	20
	○ESG 우수기업 포상금 (10,000천원×2개사)			20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ESG 실천 우수기업 2개사에 대하여 1,0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정하고 있어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관련 규칙에는 포상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ESG 실천을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①지난 10월, “관련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한 후, ②“포상대상 및 지급기준”을 재정비한 개정안에 대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③’24년 1월, 규칙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으로 사료되어 소요예산 중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완비된 이후 편성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23년 8월, “서울형 마이스 ESG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9월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서울 마이스 ESG 시범 운영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 이는 사업부서에서 지방의회의 '24년도 예산안 심의·승인 전에 신규사업의 일부를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先집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적정하지 못한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5〉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1)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조례13조에 따라 마이스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u>마이스 단체 행사·유치를</u> 통해 마이스 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 2. <u>마이스 단체 행사 개최를</u> 통해 서울특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② 마이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 ----- 1. <u>마이스 유치를</u> ----- ----- ----- 2. <u>마이스 개최를</u> ----- ----- 3. <u>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서울특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u> ② -----

〈표 2-96〉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2)

현 행		개 정 안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최근 1년간 마이스 유치·개최실적이 뛰어난 단체(개인) 1개사	1천만원	----- ----- 단체(개인) 1개사	-----
<u>전년대비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실적 상승이 가장 높은 체(개인) 1개사</u>	1천만원	< 삭 제 >	
< 신 설 >		최근 1년간 마이스 지속가능성의 실천 실적이 우수한 단체(개인)	1천만원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사업별설명서 p.92)

- 동 사업은 서울관광의 고부가 가치화 및 고품질화를 통해 지출 규모가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①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1억 5,000만원), ②해외 럭셔리관광 커뮤니티 연계 홍보(2억 9,000만원)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9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440
◦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				150	
- 서울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지속적인 신규콘텐츠발굴				80	
- 특화된 해외매체활용 홍보마케팅 추진 서울프리미엄관광인지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70	
◦해외 럭셔리관광 커뮤니티 연계 홍보				290	
- 프리미엄 관광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130	
- 프리미엄관광 업계 대상 홍보마케팅				120	
- 프리미엄관광 관련 전문가 간담회 운영				40	

- 고부가가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리미엄 관광'을 육성하여 서울관광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동 사업의 '23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토하면, '2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2년 12월1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바 있고, 동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사업내용대로 소요예산을 승인한 바
-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①서울 프리미엄 관광육성(사무관리비 4억 3,000만원)과 ②해외 도시·기업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이라는 개별 세부사업을 단일 계약건으로 통합발주하고, '23년 6월 1일, 계약금액을 6억 7,000만원으로 한 “서울 프리미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관련 법령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2개의 세부사업을 통합발주한 것은 문제요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단일 계약건으로 통합계약을 한 것일 뿐, 2개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의 사업내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전용·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심사·의결한 당초 사업내용과 용역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검토되어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지출사례로 판단됨

〈표 2-98〉 의회가 승인한 사업내용과 실제 용역내용 비교 ('23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서의 사업내용 (예산액)	실제 용역 내용 (예산액)
해외 도시·기업 연 계 관 광 콘 텐 츠 개 발 및 확 산	◦해외 지역별 도시 및 기업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 200 ◦군기시 VR 콘텐츠 체험시설 운영 50	◦ILTMB박람회 - 부스임대료 50 - 기념품 및 운송비 등 운영 및 지원 20 ◦브랜드마케팅 - 세렌디피안 가입비, 콘텐츠제작운영 20 ◦관광콘텐츠 확산 - connections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27 ◦민관협력 팸투어추진 - 시그니얼XKTO협력 팸투어 15 ◦민관협력 마케팅 - 돈의문&군기시 유지보수 비용 등 5
서 울 프 리 미 엄 관 광 육 성	◦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 굴 및 확산 136 ◦프리미엄 관광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 290 ◦자문회의비 등 4	◦영상 및 콘텐츠 제작 - 콘텐츠발굴 126 ◦비짓서울 홈페이지 - 기획 및 디자인 4 ◦프리미엄관광 트레블마트 기획 운영 - connections luxury seoul 개최 홍보마케팅 280

※ 일반관리비, 대행료, 부가가치세 104,611천원 별도

- 편성요청된 '24년도 예산안의 경우, ①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1억 5,000만원), ②해외 럭셔리관광 커뮤니티 연계 홍보(2억 9,0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미 금년도에 계약하여 지출한 결과를 유추하면, 의회의 의결결과와 다른 사업내용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결한 사업내용대로 계약 및 집행됨이 담보된 이후 소요 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p.102)

- 동 사업은 우수 관광 상품을 육성·지원하고 여행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9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70
	○	관광사업체 디지털 전환역량 강화		30
	○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140
		-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28개사*5,000천원		140
	○	신규관광상품 홍보 지원 등 사업 활성화		50
		- 인쇄비, 물품구매, 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		50
	○	서울 인바운드 여행사 얼라이언스 운영		50
		- 상하반기 관광설명회		20
		- 시장별 정기 간담회 실시		3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중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공모)하여 선정된 28개 업체에 지원금(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비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관 부서는 동 사업은 대기업을 포함하여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모든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실제 선정 및 지원된 업체에는 대기업을 선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가 종합 여행업체의 우수 관광상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대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는 부합될 수 있으나,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원배분의 합목적성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 대상을 중소여행 업체로 한정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동 사업중 **우수 관광 상품 개발·운영 지원**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우수 관광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 항목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보조금 심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을 최종적으로 대행하는 관광재단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동 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대행기관이 사실상 입증하는 것인 바,
 - 서울시가 사실상의 보조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①법정 절차인 보조금 심의를 회피하고 ②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 및 평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와전될 수 있어 보조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FIT 맞춤형 관광상품 공모**(사업별설명서 p.116)

- 동 사업은 공모전을 통해 양질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자 사무관 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0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30
	○	여행상품 개발 공모전 운영				16
		- 공모전 홍보(제작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3
		- 공모전 운영 비용(심사위원 수당, 평가회의 운영 등)				10
		- 수상자 상금(대상 1명*1,000,000원, 최우수상 2명*500,000원, 우수상5명*300,000원)				3.5
	○	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				10
		- 웹페이지 운영관리(기획전 개시 등)				3
		- 가이드 컨설팅 지원				4.5
		- 홍보비				3
	○	물품구매 등 기타 사업비				3

- 관련 기준은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법령·조례 등에 따라 기타보 상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시상금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품은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별설명서에 시상금품 편성 근거로 제시한 관련 조례는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서 공모전 수상에 따른 시상금품의 근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만약 시상금품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정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별설명서 p.138)

- 동 사업은 주요 관광명소 안내표지판의 다국어(영문, 중문, 일문) 표기를 점검·정비하여 관광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80	
사	무	관	리	비	80
		○외국인 현장점검단, 캠페인 운영 (30,000천원×1회)		30	
		○외국인 현장점검단, 캠페인 운영에 따른 오류 표지판 정비 - 50,000천원×1회		50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관광 안내표지판의 외국어 표기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외국인 현장점검단 및 시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점검활동비 및 신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민간인에게 경비나 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표 2-102〉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내용(’23년도)

□ 사업개요

① 외국인 현장 점검단 운영 (7 ~ 8월)

- 점검기간 : 7.31 ~ 8.20 (3주) ※ 모집기간 : 7.3 ~ 14
- 점검인원 : 30명 (영어권, 중화권, 일어권 각 10명) ※ 총 10개팀(3인1팀)
- 점검내용 : 서울시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은 표기, 오기, 외국어 표기 누락 등
- 점검혜택 : 점검활동비 지급(20만원 상당 국민관광 모바일 상품권)

② 시민 신고제 운영 (8월)

- 점검기간 : 8.1 ~ 20 (3주)
- 참여대상 : 서울시민, 서울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 등 누구나
- 점검대상 : 서울시 전역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관광명소 유도표지판 등 4종
- 신고자 혜택 : 최종적으로 표기 오류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건당 1만원 국민관광 모바일상품권 제공(총 100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6723 (’23. 6.16),

“「2023년 외국인 현장 점검단 및 시민 신고제 활용」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표기 오류 정비 계획”

-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또는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여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 단계에서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민간인에게 활동비 정액 및 시상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 “활동비”의 경우, 관련 조례상의 시민 자원봉사자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위한 조항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실비형식의 정액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조례에는 민간인에게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민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별설명서 p.146)

- 동 사업은 의료관광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12억 6,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0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경	기	관	등	에	대	업	한	비	1,262
	상	적	위	탁	사	대	업	한	비
									68
									60
									60
									142
									102
									10
									10
									20
									251
									45
									513
									113
									10

- 사업내용중 **웰니스 바우처 지원 사업**(1,000만원)은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에게 1인당 웰니스 체험비(최대 10만원, 환자 포함 동반자 4인까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 대상이 내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해당되나, 외국인은 협의 제외 대상으로 확인됨
- 사업내용중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보험 운영**(1,000만원)은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이용한 외국인이 성형수술 및 시술 부작용으로 재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재수술비용과 재방문 항공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 관광 안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보험 운영**도 사업의 내용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나, 사업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로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시가 의료 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면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인에게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재수술비용, 재방문 항공료중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 금액의 보장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소액이라도 서울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와 비교하여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사례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6)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9)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2)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56)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9)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별설명서 p.63)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66)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합하여 총 3조 8,518억 7,7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진출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표 2-104〉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명	'24년도 예산안	'23년도 본 예산	'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최종예산대비)
합	계	3,851,877	3,987,841	4,321,680	△469,803
법정전출금	소 계	3,835,963	3,958,762	4,292,601	△456,638
	지방세 전출	1,757,043	1,761,108	2,052,398	△295,355
	담배소비세 전출	257,277	261,992	284,423	△27,146
	지방교육세 전출	1,811,356	1,926,002	1,946,118	△134,762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전출	8,255	7,629	7,629	626
	지방이양사무 지원	43	43	43	0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1,987	1,987	1,987	0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 (조례상 전출금)	15,914	29,079	29,079	△13,164

○ 서울시가 편성한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 등 6개 사업, 3조 8,35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 총액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523억 9,800만원) 보다 △2,953억 5,500만원 감소한 1조 7,570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서울시의 '24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이 '23년도 본예산(22조 5,192억원)보다 △1조 174억원 감소한 21조 9,755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세수 감소와 연동한 편성 사례로 사료됨
 - 다만, 지방세 전출금은 서울시교육청의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11조 1,605억원)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을 이전받는 기관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계획하도록 보다 정밀하게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전출·전입 받는 기관 모두 재원 감소 상황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2,844억 2,300만원) 보다 △271억 4,600만원 감소한 2,572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1조 9,461억 1,800만원)보다 △1,347억 6,200만원 감소한 1조 8,113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은 지난 '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요경비의 4.5%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25%, 자치구 2.25%)가 부담하고 있는 바,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 경비 3,669억 2,300만원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82억 5,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9)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 이내)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인 바,

- 초,중·고 입학준비금 사업에 한정하여 서울시 분담금 159억 1,400만원(보통세의 0.09% 수준)을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5〉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내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㉑	2024 예산(안) ㉒	증 감 ㉒-㉑	추진목표
계		29,079	15,914	△13,165	
일반교육경비		27,304	15,914	△11,390	
1	입학준비금	17,268	15,914	△1,354	초·중고 신입생 195,000명
2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	△600	
3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	△660	
4	여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	△1,000	
5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776	
6	대안교육기관 지원	7,000	-	△7,000	
특별교육경비		1,775	-	△1,77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진초 외 2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경비중 1/2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9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이양사무 지원**은 지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한 지방이양사무지원 예산을 '22년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분 4,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임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1)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2,104억 1,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2,033억 7,100만원)보다 70억 4,4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내년도 급식인원이 당초 809,759명에서 786,463명으로 △23,296명 감소되나, 급식단가 인상(식품비 4.6%, 인건비 2.5%, 관리비 3.2%)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106〉 2024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원, 명)

학교급별		변 동 내 역 (' 2 3 년 도 → ' 2 4 년 도)								
		급 식 인 원			급 식 일 수			급 식 단 가		
		' 2 4	' 2 3	증 감	' 24	' 23	증감	' 24	' 23	증감
계		786,463	809,759	△23,296						
초	공립	355,583	371,237	△15,654	192	192	-	4044	3,778	266
	국사립	23,212	23,054	158	192	192	-	5890	5,466	424
중	공립	149,746	154,475	△4,729	180	180	-	4418	4,153	265
	국사립	51,421	53,175	△1,754	180	180	-	6593	6,200	393
고	공립	68,845	68,646	199	173	173	-	4615	4,343	272
	국사립	133,199	134,886	△1,687	173	173	-	6843	6,519	324
특수	공립	1,795	1,644	151	192	192	-	4634	4,369	265
	국사립	2,662	2,642	20	192	192	-	6480	6,057	423

※ ① 공립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교육비특별회계 부담), 공립학교 급식보조인력 및 국·사립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5:3:2 분담 유지

② 자료근거 :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291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6)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237억 4,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61,915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791억 4,500만원중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과 동일한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30%에 해당하는 237억 4,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238억 2,300만원 대비 △7,9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급식단가 인상(식품비 4.6%, 관리비 3.2%, 인건비 2.5%)에도 불구하고 원아수가 감소(△3,463명)되어 소요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7〉 2024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편성기준

학 교 급 별	변 동 내 역 (' 2 3 년 도 → ' 2 4 년 도)								
	급 식 인 원			급 식 일 수			급 식 단 가		
	' 2 4	' 2 3	증 감	'24	'23	증감	' 2 4	' 2 3	증 감
계	61,915	65,378	△3,463						
공 립	14,138	16,271	△2,133	182	182	-	4,264	3,994	270
사 립	47,777	49,107	△1,330	217	217	-	6,578	6,345	233

※ 공립유치원 △ 2,133명 감소, 급식단가 270원 증가
 ※ 사립유치원 △ 1,330명 감소, 급식단가 233원 증가
 ※ 자료근거 :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311

□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 (사업별설명서 p.233)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외방문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자치구당 2명)에게 국제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기준에도 신규 위탁사무의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11월 1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19년 12월16일 민간위탁에 대해 원안가결 받은 것으로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기재하고 있음
- 지난 '19년도에 편성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조성**의 경우, 동 사업과 유사한 ①청소년 국제 역사문화체험(2억원), ②내몽고 쿠부치사막 사막화방지 나무심기(5,000만원)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19년도 당시에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으로써 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이미 '19년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도 '22년 3월31일까지로 재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관련 조례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을 지난 '19년도에 편성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조성**과 계속성을 고집한다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년도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024년도 예산안중 시민참여예산으로 유사한 위탁내용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바,

- 관련 조례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정한 조례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13) 시민건강국

□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p.695)

- 동 사업은 마약예방관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치료·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27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 한 것으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705	
사	무	관	리	비	100
	◦ 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15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0	
	◦ 마약관리센터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등			300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5,000,000원*2명*3개월			150	
	- 간호사 4,167,000원*2명*3개월			25	
	- 정신건강 전문인력 4,167,000원*3명*3개월			37	
	- 임상심리사 4,167,000원*2명*3개월			25	
	- 임상병리사 4,167,000원*1명*3개월			12	
	- 보조상담인력 3,334,000원*1명*3개월			10	
	- 연구인력(정신건강의학,보건학,역학,통계학) 6,667,000원*2명*3개월			40	
시	설			비	2,282
	◦ 마약관리센터 공간조성			2,198	
	○ 설계용역비 등			84	
감	리			비	22
	◦ 감리비 등			22	

- 관련 법령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사업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마약예방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직접 운영 하기 위해 사업소인 은평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0월16일 발의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마약예방관리센터를 시립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는 바, 관련 의안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마약예방관리센터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소인 은평병원에 위탁하기 위해 인건비성 소요재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서울시가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무관리비를 통하여 지출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법에 사업소에 대한 위탁 근거가 있다 하여도 위탁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까지 편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산편성 사례와 차이가 있어 사업소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비 가내시 미통보 사업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71)
-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p.517)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614)
-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국비) (사업별설명서 p.567)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사업별설명서 p.617)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사업별설명서 p.620)

○ 동 사업은 시민건강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①**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18억 5,000만원), ②**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430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 ③**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국비)**(1,200만원), ④**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3억원), ⑤**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2,800만원), ⑥**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39억 4,800만원)는 국비·시비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민건강국의 사업중 전액 국비 혹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23.11. 1)까지 국비 가내시가 없음에도 국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별설명서 등에는 국비가 교부된다는 내시(가내시) 없이 선제적으로 소요 예산을 편성한 사유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음

- 특히,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국비 가내시가 없었음에도 사업별 설명서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18억 5,000만원) 가내시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사업부서와 이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사료됨

- 더욱이 '24년도 정부 예산안중 국제수입(367조 4,000억원)이 금년도(400조 5,000억원) 보다 줄어들어(△33조 1,000억원) '24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국비 교부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 국비 가내시가 없는 사업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국비 예산을 '선(先) 편성'한 사례로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서울시가 임의로 국비를 편성할 경우, 국비 편성 예산 대비 과·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응편성된 시비(매칭시비)까지도 연동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는 바,
 - 가내시 통보 없이 국비를 편의적으로 편성한 사업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국비 교부 시 간주처리로 세입조치한 이후,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는 국비의 교부와 간주처리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시비부담분을 대응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코로나 19 상황이 유동적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국비·시비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39억 4,800만원을 편성한 바, 소요예산중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등은 금년도 최종예산(6조 5,225억 9,300만원) 대비 증액(4,686억 5,600만원) 편성(6조 9,912억 5,000만원)하고 있으나, 동 편성 사례와 같이 사업부서가 금년도와 대비하여 관행적으로 가내시 없이 편성한 사례로 인한 허수는 아닌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재무국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별설명서 p.98)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납세조합에 대해 납부된 세액의 2%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2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53	
기	타	보	상	금	253
○ 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징수교부금				253	

- 관련 기준에는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명칭에 “보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안이 아니라, 관련 법 등을 근거로 징수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바,
 - 사업명칭에 사업내용과는 이질적인 표현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미래공간기획관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업별설명서 p.24)

- 동 사업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수당 등 1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을 소요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임

〈표 2-11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5			
사	무	관	리	비	105		
	○ 총괄건축가 수당 (65,198원×8시간×4일×4주×12개월)			100			
	○ 학술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2,500,000원×2회)			5			
민	간	인	국	외	여	비	20
	○ 민간인국외여비 (10,000,000원×2회)			20			

- 총괄건축가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동조⑦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처럼 민간인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만일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인국외여비를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 조례에 근거한 여비는 건축정책위원회에 해당 되는 여비이며 건축정책위원회는 별도의 세부사업인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수당과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있어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인국외여비와는 예산집행대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24년도 예산안중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중 서울브랜드총괄관 국외여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지난 10월16일, 서울브랜드총괄관에 대한 여비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동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중 여비의 편성 및 지출에 대한 근거규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의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15회계연도의 경우, 다수 사업이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중 편성요청된 민간인국외여비(2,000만원)는 조례상 지원근거를 구체화시킨 이후 편성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16)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역량 강화 (사업별설명서 p.106)

- 동 사업은 역량있는 디자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1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평가, 모집 홍보 및 선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평가 200,000원 × 8명 - 모집 홍보 및 선정 등 11,800,000원 ○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지원 및 교육, 홍보 28,600,000원 - 디자인 전문가 컨설팅 7,600,000원 ○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31,400,000원 - 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63,000,000원 - 대행수수료 6,000,000원 ○ 디자인 제작 및 구현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0,000원 × 6개 기업 			<p>13</p> <p>1</p> <p>12</p> <p>36</p> <p>28</p> <p>7</p> <p>94</p> <p>31</p> <p>63</p> <p>6</p> <p>150</p>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디자인 분야의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 개발 구현비(2,5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 그간 중대한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어 중소기업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 2024년도부터는 사업추진방식이 시설비 편성을 통한 서울시 직접 수행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서울 디자인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에서 소관부서는 중소기업 사전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11월 22일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예산편성 및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시의회의 확인과정이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를 예산심사 전이라도 해소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나, 향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111)

- 동 사업은 공공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미술작품 감상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1	
사	무	관	리	비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 공공미술작품 상시보수 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 영조물배상 보험료 			14	
	12			2	
공	공	운	영	비	21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비			21	
시	설			비	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 공공미술작품 점검 및 상시보수 등 관리 - 예비비(긴급보수 및 긴급 안전점검) 			366	
	316			50	

- 관련 법령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3조 554억 2,800만원)의 0.37%, 1,212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편성요청한 시설비중 예비비분(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소액에 해당되나 발생하지 않은 수요까지 고려하여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만일 회계연도 개시 후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으로 예비비 승인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적법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관련 기준이 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판단하고 세부사업에 긴급보수 및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요청 한 것으로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나,
 - 관련 기준은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중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 사업부서가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부실하게 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일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좋은 간판 공모전 개최 (사업별설명서 p.178)

- 동 사업은 좋은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행사운영비(1,900만원)를 포함하여 5,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1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1	
사	무	관	리	비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디자인 업그레이드 ◦ 공모전 심사 및 상패 제작 등 운영 경비 			12 7	
행	사	운	영	비	19
	◦ 서울 좋은간판 온라인 공모 및 전시기획 용역			19	
기	타	보	상	금	13
	◦ 수상자 시상금 지급			13	

- 관련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7) 재난안전관리실

□ 긴급 도로개선 사업 (사업별설명서 p.297)

- 긴급 도로개선 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상습정체 도로 및 사고위험 도로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000		
시	설			비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선 공사비 - 한강대교 북단 연결램프 교통정체개선 - 통일로(연신내역 1번출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 - 불광로(불광역 9번출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 			1,200	500	1,300

- ※ 자료근거 : ①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298
 ②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1856 ('23. 8. 9)
 붙임 2. 긴급 도로개선 사업 대상지 목록

- 동 사업은 지난 3월, 1분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제안에 선정된 것으로, 사업부서가 시민 제안을 수렴하여 자치구의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 14개소를 선정한 바
- '23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선정된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입찰 공고하였으며, '23년 12월중 시행사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은 회계-기금 간 유사·중복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소요예산은 '23년도에 지출계획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 실제 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은 '24년도에 편성요청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출하려는 것은 동일 회계연도에 동일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은 아닌 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벗어난 편성·지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부서의 방침 등에 따르면 동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착수 후 1년으로, 사업부서의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더라도 설계용역 결과는 '24년도 말에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고
 - 사업별설명서에는 '24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시기인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 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
- 즉, '23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 용역기간이 365일로 공고되어, '24년 11월 이후에나 설계가 준공될 것으로 사료됨에도

- 3개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대로 라면 설계용역 준공 시점인 '24년 11월 경 공사를 착공하고 한 달여 기간 만에 준공한다는 것은
- 설계기간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예상한 결과이거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예산요구일 수밖에 없어 설계완료 시점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내 지출가능한 규모의 소요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15〉 긴급 도로개선 사업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	
기본 및 실시설계	~'24.10	- ^{주1)}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공사시행	'24. 1~'24.12	3,000	공사시행(3개소 예정)

주1)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 (4억 9,800만원)

※ 자료근거 :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299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별설명서 p.301)

- 동 사업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보조간선 도로의 병목구간 정체를 해소하고자 해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개설구간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19 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900
시	설		비	1,900
	◦ 보상비			1,900

- 동 사업을 최초 계획한 지난 '20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23억원으로 당시 사업부서는 서울시 자체심사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 설계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총사업비(420억원)가 당초 계획보다 88.3%, 197억원 증가됨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 더욱이, 사업규모 변경으로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시 자체 투자심사가 아닌 중앙투자심사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 서울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지난 10월 실시된 2023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로 통보되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 관련 지침은 재심사의 시기에 대해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계약체결 이전 또는 사업시행 이전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도 “실시설계 확정 후 재심사 의뢰”를 할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계획변경과 관련된 실시설계는 '23년 12월 31일 준공될 예정으로 확인되어, 본예산에 편성요청한 19억원은 전액 감액조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준공된 이후 사전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이행하고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사업별설명서 p.330)

- 동 사업은 중화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중화역 교차로 부근의 건물 등을 철거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길이를 125m 연장하고자 시설비 20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63	
시	설			비	2,063
	◦ 도로확장 공사비			1,400	
	◦ 보상비			663	

- 관련 기준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를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비로 보상비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3년도의 경우,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철거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4년도 예산안도 도로확장 공사비를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에 따라 소요될 수 있는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지난 '22년도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 「건축기술 진흥법」 등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리라고 정하고 있어,

- 기존 건물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별도로 감리 업무에 소요될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18〉 연도별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편성시기	통계목	예산액	추진세부내용
2 0 1 8 본 예산	시설비	100	◦ 타당성조사
2 0 1 9 본 예산	시설비	1,000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1구간)
2 0 2 0 본 예산	시설비	103	◦ 기본 및 실시설계비
2 0 2 1 본 예산	시설비	3,000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1구간)
2 0 2 1 1 회 추경	시설비	2,225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구간)
2 0 2 2 본 예산	시설비	5,816	◦ 토지2필지, 건물1동, 영업권10건 보상비 (2구간)
2 0 2 3 본 예산	시설비	4,995	◦ 보상비 (2구간)
2 0 2 3 1 회 추경	시설비	1,500	◦ 1, 2구간 철거공사비
2 0 2 4 예산(안)	시설비	2,063	◦ 도로확장 공사비 및 보상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사업별설명서에서 발췌 및 편집

- 관련 기준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향후 사업추진중에 감리 등에 대한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심의·의결된 **시설비**를 변경하여 **감리비**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 예산의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회계연도중 소요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시설비**와 구분하여 편성요청하지 않은 것은 편의적, 관행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사료됨

- 특히, 사업부서(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가 7건이며 그 중 3건은 감리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사업으로 검토되어, 금번 편성요청 사례와 함께 습관적인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2-119〉 2022회계연도 도로계획과 시설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과목	예 산 액	감	증	변 경 승 인 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시 설 비	1,890	△206	-	'22. 7.11
"	감 리 비	-	-	206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시 설 비	1,800	△198	-	'22. 6. 3
"	감 리 비	200	-	198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시 설 비	4,500	△139	-	'22.12.22
"	감 리 비	500	-	139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 개 선 분 담 금 계 정)	시 설 비	27,353	△123	-	'22.12.26
"	감 리 비	1,355	-	123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시 설 비	2,500	△99	-	'22.12.14
"	감 리 비	-	-	99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시 설 비	1,000	△71	-	'22. 8.16
"	감 리 비	-	-	71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시 설 비	5,601	△22	-	'22.12.13
"	감 리 비	698	-	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영동대교 복단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사업별설명서 p.370)

- 동 사업은 영동대교 복단 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
고자 시설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12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0
시	설		비	200
	◦ 타당성조사 용역			200

- 지난 10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
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10월 26일, 사업부서의 요구액(2
억원)보다 △28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확인됨
- 조정된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하나
관련 기준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소액이라
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요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술용역 타
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된 금액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사업** (사업별설명서 p.526)

- 동 사업은 유동인구 및 관광객이 많은 4개 지역(서촌, 종로, 익선동, DDP 인근)의 맞춤형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시설비 37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2-12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708
시	설		비	3,708
	○ 공사비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신규 추진)			3,708

- 지난 8월,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적정)를 반영하여 노후 파손 및 불량 보도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인 **시도(市道) 보도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를 통해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앞서 이행되어야 할 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준수하였으나,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사업의 일부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先집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적정하지 못한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별설명서 p.545)

- 동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제기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비 17억 5,000만원 을 포함하여 19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900
시	설		비	1,750
	◦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공모 등)			1,750
감	리		비	150
	◦ 설계 감리비			150

- 동 사업은 총사업비 402억원으로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지난 10월 실시된 2023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19년 12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공공 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규정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지난 9월, 동 사업과 관련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지난 10월,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기간을 발주 및 계약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으로 확보할 것과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의도 구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감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설계비와 설계감리비를 조정하고, '24년도에 집행가능한 규모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23〉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설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설계공모비	설계감리비
부 서 계 획 (검 토 의 회)	1,320	100	-
사 전 검 토 결 과 의 견 (A)	설계비 1,713 기타비용 492	100 (적정함)	420 (총 감리비중 일부)
2 0 2 4 예 산 안 (B)	1,650 (기본 및 실시설계)	100 (설계공모)	150 (설계 감리비)
잔 여 분 (A-B)	555	-	270

※ 자료근거 : ①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546
 ②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11002 ('23.10.27)
 붙임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 다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물가 및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이행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또한 총사업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 적시된 예산액 441억 9,300만원외에도 별도로 확보가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은 물론 사업기간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24〉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전검토 의견중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검토항목			검토의견
계			44,193 ^{주1)}
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33,286
		물가상승	4,065
		고용개선지원비	665
	기타	부지조성공사비	일부 반영 권장
		기존시설철거비	-
		전시공사비	-
설계비	요율	설계비	1,713
		인증관련	492
		특수요인	-
감리비	감리비	감리비	3,765
부대비	용역비	설계공모비	100
		경계·현황측량	별도 확보 필요
		측량·지반조사	별도 확보 필요
		문화재조사	-
		각종 영향평가	별도 확보 필요
		도시관리계획	-
		인증관련 컨설팅	-
		설계경제성 검토	검토기간 필요
		설계적정성검토	-
		BIM, BEMS 등	-
		설계의도구현	별도 확보 필요
		증축·리모델링	-
	시설부대비	시설부대경비	107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 확보 권장

주1) 일부 반영 권장, 별도 확보 필요 등 불포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연번 사23-04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18) 주택정책실

□ 성수전략지구 수변계획 수립 용역 (사업별설명서 p.350)

- 동 사업은 성수전략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등(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5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00	
사	무	관	리	비	150
	◦ 용역비, 공모비 등			150	
기	타	보	상	금	350
	◦ 당선비			350	

- 용역비를 사무관리로 편성한 것은 관련 기준이 '24년도부터 사무관리비중 일반용역비를 신설하여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바,
- 동 편성사례의 경우, 지구정비계획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성수전략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을 지출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사안으로 사료되지 않음
- 특히, 동 사업을 위한 방침에는 향후계획을 '23년 10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동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은 시설비로 편성하여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부서가 **성수전략지구 수변계획 수립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우회 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예산안 심사과정중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은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관련 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11월 1일 예산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미 제출된 현재 단계에서 적정 예산과목인 시설비로 수정하여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409)

- 동 사업은 주거안정 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7,6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5,400만원을 포함한 7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12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30
사무관리비				76
◦ 안심고시원 현장조사비				34
◦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운영				41
민간경상사업보조				654
◦ 안심고시원 리모델링비용 등 지원				654
- 안심고시원 리모델링비용 지원				600
- 안심고시원 냉난방비용 지원				54

- 관련법령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거쳐 인증이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① 기존 고시원(10개소)은 공사내역을 제출받아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1호실(9㎡)당 300만원, 최대 6,000만원(20호실)까지 지원하고, ② 신축 고시원(10개소)은 냉·난방비용의 내역을 제출받아 1호실(9㎡)당 월 3만원, 최대 540만원(6개월, 30호실)까지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조례에는 고시원을 포함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 동 사업은 안심고시원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인증된 고시원에 대해 리모델링비용과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인증제도와 ② 인증된 고시원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조례상 보다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부서가 '23년 8월 수립한 사업방침에도 '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10월 6일에는 동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에 12월 18일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관련 조례안에는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 사업별설명서에는 리모델링비용 및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관련 조례안의 제6조를 들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일 뿐 인증받은 고시원에 대해 리모델링비용과 냉·난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통해 소요예산 중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4,100만원)와 인증받은 고시원에 대해 리모델링비용 및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6억 5,400만원)의 편성근거가 예산안 의결시한(12월 16일)까지 마련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리모델링비용(6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리모델링비용은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자본형성적 경비라는 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승인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요청된 리모델링비용(6억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예산과목(통계목)이 수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19) 균형발전본부

□ 서초 염곡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별설명서 p.150)

- 동 사업은 서초 염곡 도시개발사업(염곡 차고지 복합개발, 공동주택 건설 등) 추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8,000만원 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80
사무관리비				18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수수료				180
- 기본수수료				80
- 부가수수료				100

- 관련 법령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투자심사 요청에 앞서 시행하려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물순환안전국

□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315)

- 동 사업은 도림천 일대와 한강을 연결하는 대심도 방수로를 설치하여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25억원을 포함하여 5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x12,500) 50,000	
시	설	비		(x11,962) 47,850	
	◦ 시설비			47,850	
감	리	비		(x512) 2,050	
	◦ 감리비			2,050	
시	설	부	대	비	(x25) 100
	◦ 시설부대비			100	

- 동 사업은 도림천 일대에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기간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집중호우 발생시 빗물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하여 한강과 연결되는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 예비 타당성조사는 면제된 바 있음

- '23년도에 편성된 121억 2,400만원을 재원으로 설계 및 시공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3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사업구간 변경 및 사업규모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는 당초(3,000억원)보다 66.9%, 2,009억 8,400만원 증가한 5,009억 8,400만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당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KDI)에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총사업비 확정 및 국고보조금 분담 비율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으로
-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미완료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준공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예정된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3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 121억 2,4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요청된 것으로 검토됨

〈표 2-129〉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2023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124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3. 1~'23. 6	-주1)	
설계, 시공 일괄입찰	'23. 7~'23.12	12,124	설계, 시공 일괄입찰 시행

주1) 2022년도 예산으로 추진 (19억 7,900만원)

※ 자료근거 : 물순환안전국,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51

- 동 사업이 '24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500억원은 본공사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의 일부로 당초 '23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11월에는 우선시공분 착공 및 본공사 실시설계, '24년 6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 기본계획 수립이 지체됨에 따라 이후 절차가 모두 지연되었고, 이후 변경된 일정대로 입찰공고 및 적격자 선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본공사 시행은 '24년 12월로 예상되는 바,
- 공정지연으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여도 불용되거나 명시이월이 요청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등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한 물량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소요만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30〉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추진 일정

사업추진절차	당초 일정	변경 일정
입찰공고	'23. 6	'23.11
사업설명회,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23. 7 ~ '23.10	'23.12 ~ '24. 4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3.11	'24. 4
우선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23.11 ~ '24. 5	'24. 5 ~ '24.11
설계심의, 본공사 시행	'24. 6	'24.12

- 아울러 '2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과 별개로 당해연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30억 3,100만원은 11월 15일 현재까지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동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던 바,
- 국회의 '24년도 예산안 의결 내용에 따라 동 사업에 편성된 환경부의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예산안 심의·조정시 국회의 예산안 의결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1) 인재개발원

□ 예산과목(통계목)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e-러닝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
-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22)
-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별설명서 p.67)

○ e-러닝 운영은 전산개발비 4억 4,800만원이 포함된 12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전산개발비(4억 4,800만원)는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55
사 무 관 리 비				394
		◦ 사이버외국어강좌 운영		81
		◦ 자격증강좌 운영		94
		◦ IT전문 사이버교육 운영		109
		◦ U-지식여행 운영		101
		◦ 업체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6
공 공 운 영 비				412
		◦ 교육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솔루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12
전 산 개 발 비				448
		◦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ISP)		448

- 그러나 관련 기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감리비만 전산개발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연구용역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나 감리용역이 아닌 조사·연구용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전산개발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에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 소요예산(4억 4,800만원)은 관련 기준들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해 부적절한 예산과목(**전산개발비**)으로 편성요청된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다른 실·본부·국(디지털정책관)에서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요청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 사업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요청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부적절한 예산과목(**전산개발비**)으로 편성요청된 다른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동 사업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유지관리 및 고도화**, 디지털정책관 소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푸른도시국 소관 **사면관리시스템 고도화**의 경우에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부적절한 예산과목(**전산개발비**)로 편성요청 하고 있어 **연구용역비**로 통계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은 사무관리비 6,100만원이 포함된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무관리비**(6,100만원) 중 수업목적보상금 4,600만원이 포함된 바,

- 수업목적 보상금(4,600만원)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인재개발원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에 지급하기 위해 신규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2-13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1,089
사 무 관 리 비				61,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업목적 보상금</u>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운영 ◦ 교육 현업적응도 평가 ◦ 교육훈련계획 책자 발간 				46,684
				1,800
				300
				7,500
				4,80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0,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개발 업무추진비 				10,005

- 관련 기준은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과목 중 **사무관 리비**로 편성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에는 수업목적 보상금(4,600만원)을 **사무관 리비**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수업목적 보상금은 단순한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재개발원은 ① 수업목적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제3자(보상금수령단체)에게 지급하고 제3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한다는 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에 지급된 수업목

적 보상금 중 일부는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수수료로 처리되며, 수령거부 등으로 인해 분배되지 않는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된다는 점,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도 수업목적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기타 보상금보다는 사무관리비 편성을 우선 고려한 것일 수 있으나,**

- ① 관련 법령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② 관련 기준은 **기타보상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③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 이용대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만큼은 수업목적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이 부적절한 예산과목(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하여 서울시가 이를 답습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업목적 보상금 (4,6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예산과목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를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납부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훈련장비 확충**은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2,800만원이 포함된 3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의 산출근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3억 2,800만원) 중 ① 통신 및 케이블 공사비 1,200만원과 ② 배선공사 및 기타경비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표 2-13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78
사 무 관 리 비				50
◦ 교육기자재 소모품 교체 및 유지보수				5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328
◦ 노후 전관방송 및 음향장비 교체				153
- 배움관 전관방송설비				45
- 다솜관 전관방송설비				66
- 다솜관 8개소 음향설비 교체				41
◦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74
- 모니터링 카메라				105
- 네트워크 및 저장 장비				25
- <u>통신 및 케이블 공사</u>				12
- <u>배선공사 및 기타경비</u>				30

- 그러나 관련 기준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물품 등의 취득비와 공고료,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를 의미하는 바, 사실상의 시설공사를 위한 경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기준에 따라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특히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부대경비는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 동 사업은 통신 및 케이블 공사와 배선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공사)과 예산과목(자산및물품취득비)이 불일치하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이 실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예산과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이나, 사업부서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 물품 구매비용과 부대비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사업별설명서에 “공사”라고 기재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추진될 사업내용보다 과장되게 표현한 사안으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별설명서 p.56)

- 동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퇴직예정자(공로연수자, 퇴직잔여 10년이내자)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금년도(13억 9,900만원)보다 0.4%, 600만원 증액된 14억 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4A〉 산출근거 비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산출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용	소요예산
계		1,406,458		1,399,528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소계	1,371,808	사무관리비 소계	1,371,808
	◦ 강사료, 원고료	49,440	◦ 강사료, 원고료	49,440
	- 전문 (48만원×6명×6회)	17,280	- 전문 (48만원×6명×6회)	17,280
	- 전문 (36만원×8명×6회)	17,280	- 전문 (36만원×8명×6회)	17,280
	- IT보조강사 (4만원×3시간×3명×6회)	2,160	- IT보조강사 (4만원×3시간×3명×6회)	2,160
	- 보조강사 (4만원×35시간×1명×6회)	8,400	- 보조강사 (4만원×35시간×1명×6회)	8,400
	- 원고료 (14만 4,000원×5명×6회)	4,320	- 원고료 (14만 4,000원×5명×6회)	4,320
	◦ 국내문화탐방비	1,168,740	◦ 국내문화탐방비	1,168,740
	- 항공료 (22만 4,000원×1,588명)	355,712	- 항공료 (22만 4,000원×1,588명)	355,712
	- 숙박비 (13만 5,000원×826실×2박)	223,020	- 숙박비 (13만 5,000원×826실×2박)	223,020
	- 식대 (6만 5,000원×1,588명×3일)	309,660	- 식대 (6만 5,000원×1,588명×3일)	309,660
	- 입장료 (10만 1,000원×1,588명)	160,388	- 입장료 (10만 1,000원×1,588명)	160,388
	- 버스 임차료 (55만원×3일×8대×6회)	79,200	- 버스 임차료 (55만원×3일×8대×6회)	79,200
	- 보험료 (5,000원×1,588명)	7,940	- 보험료 (5,000원×1,588명)	7,940
	- 간식비 (5,000원×1,588명×3일)	23,820	- 간식비 (5,000원×1,588명×3일)	23,820
	- 교통운영비 (150만원×6회)	9,000	- 교통운영비 (150만원×6회)	9,000

〈표 2-134B〉 산출근거 비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산출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용	소요예산	
사 무 관 리 비	◦ 현장체험학습	66,890	◦ 현장체험학습	66,890	
	- 체험비 (3만 5,000원×826명)	28,910	- 체험비 (3만 5,000원×826명)	28,910	
	- 식대 (1만 5,000원×826명)	12,390	- 식대 (1만 5,000원×826명)	12,390	
	- 버스 임차료 (55만원×4대×6회)	13,200	- 버스 임차료 (55만원×4대×6회)	13,200	
	- 보험료 (5,000원×826명)	4,130	- 보험료 (5,000원×826명)	4,130	
	- 간식비 (5,000원×826명)	4,130	- 간식비 (5,000원×826명)	4,130	
	- 교육운영비 (5,000원×826명)	4,130	- 교육운영비 (5,000원×826명)	4,130	
	◦ 교육운영비	56,082	◦ 교육운영비	56,082	
	- 입교식 행사비용 (150만원×6회)	9,000	- 입교식 행사비용 (150만원×6회)	9,000	
	- 수료식 행사비용 (3만 3,000원×826명)	27,258	- 수료식 행사비용 (3만 3,000원×826명)	27,258	
	- 교육운영비 (2만 4,000원×826명)	19,824	- 교육운영비 (2만 4,000원×826명)	19,824	
	◦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 과정 교육운영비	30,656	◦ 인생이모작 준비 과정 교 육운영비	30,656	
	- 강사(전문) (36만원×10회×4회)	14,400	- 강사(전문) (36만원×10회×4회)	14,400	
	- 원고료 (14만 4,000원×4명×4회)	2,304	- 원고료 (14만 4,000원×4명×4회)	2,304	
	- 강사료 (36만원×3명×4회)	4,320	- 강사료 (36만원×3명×4회)	4,320	
	- 현장체험비 (3만 5,000원×40명×4회)	5,600	- 현장체험비 (3만 5,000원×40명×4회)	5,600	
	- 식대 (8,000원×40명×4회)	1,280	- 식대 (8,000원×40명×4회)	1,280	
	- 버스임차료 (40만원×1대×4회)	1,600	- 버스임차료 (40만원×1대×4회)	1,600	
	- 보험료 (4,200원×40명×4회)	672	- 보험료 (4,200원×40명×4회)	672	
	- 간식 (3,000원×40명×4회)	480	- 간식 (3,000원×40명×4회)	480	
	공 무 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소계	34,650	공무원 교육여비 소계	27,720
		◦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 육여비	34,650	◦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 육여비	27,720

※ 2023년도의 경우, 회계연도 중 소요예산을 증감조정 하지 않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14억 600만원) 중 **공무원 교육여비**(3,400만원)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원단가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도보다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관련 조례는 '20년 12월 개정된 것으로서 최근 3년간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해 여비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사실이 아닌 증액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례로 검토되는 바,

- '23년 3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원단가가 인상되었고, 해당 개정내용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준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여비**(3,400만원)가 금년도(2,700만원)보다 증액편성 요청된 것으로 검토됨

-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사업부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무관리비**(13억 7,100만원)의 경우, 금년도(13억 7,100만원)와 동일 규모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검토하면 사업대상인 퇴직예정자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된 대상인원(986명)과 동일한 986명이며,

- 사업별설명서에 3쪽에 걸쳐 기재된 사무관리비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사업내역 중 “인생이모작 준비 과정 교육운영비”(’23년도 본예산 사업내역)가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 과정 교육운영비”(’24년도 예산안 사업내역)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내역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산출근거와 단가, 인원수, 횟수 등이 동일한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무관리비(13억 9,952만 8,000원)와 단 1원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 중 최근 3년 추진실적에는 실제 교육대상자의 수가 '21년도에는 789명, '22년도에는 841명, '23년 9월말 기준으로는 670명으로 해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변동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실제 교육대상자의 수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산출근거의 변동요인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례답습적으로 산출근거를 재활용한 사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13억 9,952만 8,000원)의 산출근거를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승인규모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81)

○ 동 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5,300만원을 포함한 14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자산및물품취득비(3억 5,300만원)의 경우, ①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41개) 구입비 2억 4,600만원과 ② 정보통신시스템 향온향습기(2대) 구입비 2,100만원, ③ 복합기(1대) 구입비 800만원과 ④ 노후 교육용 데스크톱 PC(72대) 구입비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5〉 자산및물품취득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산및물품취득비 계				353
			◦ 정보통신시스템 향온향습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267
			-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246
			- 향온향습기 구매	21
			◦ 복합기 구매	8
			◦ 데스크탑 PC 구매	77

○ 관련 법령 등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정보시스템의 운용환경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인 ①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를 예산(2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 예산안 제출시점('23.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 또한 확보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를 확인('23.11.16)하자 지난 11월 21일에서야 뒤늦게 해당 절차(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①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네트워크스위치 41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2억 4,6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②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방침과 ③ 사업부서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며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네트워크스위치 18대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2억 4,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소요예산(2억 4,600만원)은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네트워크스위치 41대 교체)과는 상이하게 집행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사업내용은 일부가 미확정되고 사전절차(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2억 4,600만원)부터 우선적으로 편성요청하고, 관련 사전절차는 예산안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이행하는 사례에 해당되어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2)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부선 건설(민자) (사업별설명서 p.18)

- 서부선 건설(민자)는 BTO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감리비 11억 8,4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2-13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04
감	리	비		1,184
	◦ 건설사업관리(설계)			1,184
시	설	부	대	20
	◦ 설계경제성심사(VE), 자문수당, 출장여비 등			20

- 감리비의 경우,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실시설계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감리비 11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시설부대비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심사(VE) 등을 시행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12억 400만원)의 경우, 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 ②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경제성심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경비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6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1조 5,203억원(보상비 제외)으로 산정하고 있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 투자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연되어 '23년 12월 현재까지 해당 절차(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현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시기조차 불확정적인 상태로서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경제성심사 등의 시행시기를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4조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것으로서 근거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 근거법령은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4조가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물론, 실시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공고를 임의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왜곡으로 와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연되어 법정절차(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소요예산(12억 400만원)만 먼저 편성할 경우,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유사 편성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외적 편성사례'를 만드는 결과일 수 있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를 재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감사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 추진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포함한 3,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4
사무관리비				18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7
- 회의 참석수당 (20만원 × 7명 × 4회)				5
- 자료 검토수당 (5만원 × 7명 × 4회)				1
○ 감사·조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4
- 전문가 참여수당 (20만원 × 3명 × 7회)				4
○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운영				7
- 자문회의 참석수당 (20만원 × 50명 × 2회 × 30%)				6
- 자료집 제작 및 행정사무용품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
○ 시민·주민감사 업무추진				16

- 사무관리비 1,800만원에는 법률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 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련 조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법률자문단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나,

- 관련 조례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 선임 및 해촉, 자문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고, 동 조례 제32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2년 12월, 조례에 법률자문단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그간 사업방침만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문단을 비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 지난 '23년 9월에서야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경 개정된 운영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우리 시의회는 '22년도중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법률자문단의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예산안 제출기한('23.11. 1)을 경과한 현시점까지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지 않아 50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사안으로 향후 소요예산부터 우선적으로 편성요청한 후 관련 근거는 사후적으로 구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 검토의견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554)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74)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40)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20)

○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4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건의 출자 동의안과 3건의 출연 동의안이 금번 제321회 정례회중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2-138〉 출자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출자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결과
기후환경 본부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1,200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11. 3	11.22	원안가결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은 출자금 1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11월 3일,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법정 제출기한인 10월 16일이 지나 이미 제321회 정례회가 시작된 후에 제출한 것으로 법정 제출기한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22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출자금(12억원)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39〉 출연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출연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결과
복지정책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0,00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0.16	11.21	원안가결
평생교육국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26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10.16	11.23	원안가결
재무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2,65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8.14	11.24	원안가결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출연금 1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21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출연금 172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23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중 출연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출연금 26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8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11월 24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585)
-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89)
- **서울도시고속회수센터(SR센터)운영 효율화**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55)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61)
- **서울핀테크랩 운영** (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627)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69)
-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지원 지원** (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73)
- **서울패션허브 운영** (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21)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52)
- **서울둘레길 2.0 유지관리(전환)** (푸른도시여가국 사업별설명서 p.142)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373)
-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258)
-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미래한강본부 사업별설명서 p.33)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미래한강본부 사업별설명서 p.129)
- **독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미래한강본부 사업별설명서 p.28)
-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432)

○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321회 정례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6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안중 민간위탁금 편성을 위해 복지정책실 소관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과 기후환경본부 소관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서울도시고속회수센터(SR센터)운영 효율화** 사업은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 평생교육국 소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경제정책실 소관 **서울핀테크랩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서**

울패션허브 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서울둘레길 2.0 유지관리(전환)**와 행정국 소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미래한강본부 소관의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관리**, **독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와 시민건강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2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민간위탁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국내 핀테크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핀테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금 16억 3,200만원이 포함된 80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으로

- '23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가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40A〉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 위탁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결과
복지정책실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16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16	11.21	원안가결
기후환경 본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 마포자원회수시설	20,636	서울특별시 마포자원 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16	11.22	원안가결
기후환경 본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 효율화	2,959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2	원안가결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 운영 지원 ※ 노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1,449	시립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16	11.23	원안가결
경제정책실	서울핀테크랩 운영	1,632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8	원안가결
경제정책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51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14	11.24	부결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160				
경제정책실	서울패션허브 운영	5,770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8	원안가결
여성가족 정책실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 서남권직장맘 지원센터	60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4	원안가결
푸른도시 여가국	서울둘레길 2.0 유지관리(전환)	700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16	11.24	원안가결
행정국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 운영	1,200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7	원안가결
노동공정 상생 정책관	서울소셜벤처 허브 운영	1,121	서울소셜벤처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7	원안가결
미래한강 본부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 로컬브랜드카페 ※ 전망호텔	133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16	11.27	원안가결
		93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표 2-140B〉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 위탁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결과
미래한강 본 부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915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16	11.27	원안가결
미래한강 본 부	독 섬 자 별 레 운영 및 관 리	295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 립 독 섬 자 별 레 점 민 간 위 탁 (신 규) 동 의 안	10.16	11.27	원안가결
시민건강국	정 신 재 활 시 설 운 영 보 조	1,375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 간 위 탁 재 위 탁 동 의 안	10.16	11.29	원안가결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사업명칭 부여기준 고려 필요

- 가족돌봄청년 인식확산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7)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FIT 맞춤형 관광상품 공모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16)
-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 (디자인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59)
-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재난안전관리실 사업별설명서 p.55)

○ 관련 기준중 별표10을 통해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조례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년 1월, 홍보담당관에서도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과 출연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복지정책실 소관 **가족돌봄청년 인식확산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적시된 사업내용은 ‘포럼, 공모전 개최’로 검토되는 바, 관련 기준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① 지역내 포럼, 컨퍼런스, 공모전 개최, ②공모전 행사운영, ③공모전 시상금 지급 등 ‘포럼, 공모전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1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예산안 산출근거 대로 운용할 경우, 세부사업명 중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2-14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2	
사	무	관	리	비	72
	◦ 지역 내 포럼, 컨퍼런스, 공모전 개최 - 홍보비용 - 참석수당 등 (1,700,000원×6회) - 회의운영비			45,200천원 10,200천원 16,600천원	
행	사	운	영	비	30
	◦ 공모전 행사운영 (30,000,000원×1회)			30,000천원	
기	타	보	상	금	10
	◦ 공모전 시상금 (10,000,000원×1회)			10,000천원	

○ 관광체육국 소관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FIT 맞춤형 관광상품 공모**는 개별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①여행상품 개발 공모전 운영(1,650만원), ②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1,050만원)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 패키지여행(PKG)과 상반되는 개별여행(FIT)을 의미하는 용어가 세부사업명에 포함된 바, 관련 조례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여행’, 혹은 ‘개별자유여행’으로 대체가능하고, 한글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디자인정책관 소관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은 서울의 이미지를 만드는 서울색 2.0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 한 것임

- 세부사업명중 ‘기본원칙’을 의미하는 외래어 “펀더멘털”이 포함된 바, 관련 조례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사업별설명서에는 “펀더멘털”을 대체할 수 있는 ‘서울색 2.0 개발’, ‘서울색 정립’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사업명에 외래어를 포함시켜야만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 2억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관련 기준중 사업명칭 부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 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명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명에 ‘장수명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명에 ‘선제적 관리’라는 수단까지 모두를 표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명칭 부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로 사료됨
- 더욱이 ‘장수명화’는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라는 점에서 관련 조례가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에 ‘성능연장’, ‘사용기한 확대’ 등 보다 명확한 용어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 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안 제출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명시하고 있음
 - 작성·제출되는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수입과목·지출과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관련 기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세출예산을 성질별 분류하여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목 하위에 산출 근거(부기)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중 세출예산에 세입 과목인 임대 수입(임대료)을 세출과목인 임차료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세출예산중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부기)에 수입에 해당되는 '임대료'라고 명시한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어 지출에 해당되는 적정 용어인 '임차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42〉 세출예산중 임대료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	사업명	통계목	산출기초(부기)	
노동공정상 생정책관	대부업관리감독강화	사무관리비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용역(임대료, 인건비, 홍보비 등)	17
	서울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 사무실 임대료	307
비상 기획관	시민안보의식함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 시민안보의식 함양지원 - 버스 임대료	68
디지털 정책관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구축	국제부담금	○ TEIN사무실 임대료	38
미래청년 기획단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 서울청년센터 서초 임대료	80
경제 정책실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관리비	○ 서울핀테크랩 공간 임대료	6,370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 임대료 및 관리비	1,993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제2서울핀테크랩 임대료	1,083
	투자유치기반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 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	279
복지정책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사무관리비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센터 4개소 임대료	585
도시교통실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통신관료 임대료	1,142
기후환경 본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민간위탁금	○ 센터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44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무관리비	○ 부지사용 임대료	21
서울도서관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설 임대료	46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설 임대료	104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스마트 도서관 지하철 임대료	6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청소년드림센터 임대료	177
재무국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사무관리비	○ 임대료 등 직접경비	155
재난안전 관리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 행사부스 임대료	25
주택정책실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 토지 임대료 지원	713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방사장 정비 중장비 및 화물차량 임대료	7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 방사장 정비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 ○ 조류장 방사장 위험물제거를 위한 장비 임대료	5 2
도시기반 시설본부	효율적인 청사 관리			○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안 재구성

○ 둘째, 결산 현황 누락 등 사업별설명서의 통일된 작성 검증 필요

- 서울시는 사업별설명서에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별설명서에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누락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21년도에 출범하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22년도) 등이 '23년도 국·시비 전환사업 및 시비사업으로 변경된 신규(별도)사업이라는 의견이나,
- 사업별설명서중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는 ①전년도 실적을 기재하고 있고, 사업 성격도 ②계속사업으로 표기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의견처럼 신규사업으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재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에도 결산 현황을 누락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필요

- 그 외에도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경우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부기)를 명기하여 민간위탁금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민간위탁 유형의 경우에도 시설형, 사무형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임차료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별설명서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43〉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사 업 명	예 산 (안)	산 출 근 거	비 고
여성발전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1,763,835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정원12명) = 662,318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659,75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시설물 유지관리비 = 97,732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 344,026천원 ○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1,121,61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정원11명) = 587,072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457,17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시설물 유지관리비 = 77,370천원 ○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1,224,16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정원12명) = 641,716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351,297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시설물 유지관리비 = 231,150천원 ○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1,244,685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정원12명) = 649,067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375,028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시설물 유지관리비 = 220,590천원 ○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1,056,20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정원11명) = 578,554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397,276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시설물 유지관리비 = 80,371천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616,825천원 ○ 운영비 = 70,761천원 ○ 사업비 = 102,190천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796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388,337천원 ○ 사업비 = 406,068천원 ○ 시설운영비 = 83,273천원 ○ 이윤 등 = 102,970천원 		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646

※ 자료근거 : '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넷째, 출연금 산출 내역 구체적 기재 필요

- 출연금의 경우,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이행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출연금 총액만 명시하여 출연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예산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출연금의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44〉 출연금 편성 내역

사 업 명	예 산 (안) 산 출 근 거	비 고
120 다산콜재단 운영	○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 30,474,458천원	홍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 195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44,070,416천원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 3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17,565,054천원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 8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73,353,520천원	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 133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 17,458,952천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 58

※ 자료근거 : '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투자, 출자·출연기관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 관련 조례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대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서울시설공단 위탁사무 23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대행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대행사무 관리방안을 보완한 사례가 있고,
 - '17년도 1월, 조직담당관에서 투자·출자·출연기관별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 상이하여 일관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자 조례개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과 물재생시설공단을 제외한 4개 공사·공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중 대행사무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서울시설공단과 물재생시설공단외 투자기관은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 등으로만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표 2-145〉 서울시투자기관 위탁사무 처리 방식

기 관	조 례 명 및 주 요 내 용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u>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
물재생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u>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u>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u>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u>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u>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u> ,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함으로써 출자·출연의 적정성을 자율규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24년도 예산안중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유사무를 위한 출연 이외에 별도의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으나,

- 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 권한을 위탁하는 사례, ② 출연기관에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실제 출연기관에서 수탁받은 사무를 집행할 때 또 다시 외주 용역을 발주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중 수탁과 중복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행사무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대행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무를 공기관에 대행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첨부서류 부실 작성 관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명시하고 있고, 첨부서류중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는 '23년 11월 1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중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의 수입예산은 ①사업수입, ②지원금, ③외부차입으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 예산총액을 명시하고 있음

〈표 2-146〉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예산					
	소계	사업수입 ¹⁾	지원금 ²⁾	외부차입 ³⁾	기타수입 ⁴⁾	소계	사업비	부채상환	기타 ⁵⁾	여비비	
계	1,599,988	770,098	572,729	-	257,161	1,599,988	1,524,980	-	64,959	10,049	
출연	소계	1,599,988	770,098	572,729	-	257,161	1,599,988	1,524,980	-	64,959	10,049
	서울의료원	240,340	208,732	23,434	-	8,174	240,340	223,932	-	12,112	4,296
	서울연구원	52,002	7,626	39,730	-	4,646	52,002	51,474	-	-	528
	경제진흥원	236,658	165,468	65,224	-	5,966	236,658	236,120	-	-	538
	신용보증재단	597,103	299,208	95,000	-	202,895	597,103	542,335	-	52,847	1,921
	세종문화회관	65,484	18,098	44,070	-	3,316	65,484	65,142	-	-	342
	여성가족재단	32,255	12,581	17,459	-	2,215	32,255	31,946	-	-	309
	복지재단	80,111	870	73,354	-	5,887	80,111	80,111	-	-	-
	문화재단	65,281	775	55,537	-	8,969	65,281	65,104	-	-	177
	시립교향악단	25,023	7,458	17,565	-	-	25,023	24,751	-	-	272
	디자인재단	44,070	14,438	27,355	-	2,277	44,070	44,070	-	-	-
	장학재단	9,431	-	9,431	-	-	9,431	9,431	-	-	-
	평생교육진흥원	9,802	-	8,845	-	957	9,802	9,617	-	-	185
	50+재단	18,011	304	17,265	-	442	18,011	17,648	-	-	363
	디지털재단	8,611	-	7,693	-	918	8,611	7,693	-	-	918
	120다산콜재단	31,683	30,474	-	-	1,209	31,683	31,583	-	-	100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	-	-	-	-	-
	기술연구원	-	-	-	-	-	-	-	-	-	-
	관광재단	66,866	-	58,925	-	7,941	66,866	66,866	-	-	-
	사회서비스원	17,257	4,066	11,842	-	1,349	17,257	17,157	-	-	100
미디어재단	-	-	-	-	-	-	-	-	-	-	

1) 사업수입 : 정부,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

2) 지원금 :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3) 외부차입 : 사채, 보증금 등

4) 기타수입 : 영업외수입,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 기타 : 이자지급, 법인세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첨부서류, p.143

- **관광재단**의 경우, 사업수입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24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명시되어 관광재단으로 위탁(대행)하는 사업비는 60억 9,700만원으로 확인되며

〈표 2-147〉 관광재단 위탁(대행) 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계		6,097	
서울 페스타 2024 개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50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50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1,235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68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운영		336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77
의료관광 활성화		1,262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146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500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382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414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 111

※ 자료근거 : '24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사업별 설명서 재구성

-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수입을 7억 7,500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24년도 문화본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명시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비는 865억 5,300만원(국비포함)으로 확인되고
- **120 다산콜재단**은 사업수입을 304억 7,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연금(지원금)임에도 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입(사업수입)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48〉 문화재단 위탁(대행) 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계		(x36,781) 86,55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x36,699) 55,705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128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6,789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137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3,625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77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전환사업)		3,000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18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전환사업)		2,038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193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463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3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전환사업)		1,427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56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전환사업)		200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68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x82) 164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65
연극창작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4,190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35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8,952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72

※ 자료근거 : '24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사업별 설명서 재구성

- 출자·출연기관의 출차·출연금 대비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 예산 총액중 출연금과 사업수입(위탁, 대행사업 수입)의 비중은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료됨에도
- 법정 첨부서류에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수입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이 경우 연동된 통합재정통계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을 포함하여 통합재정통계보고서 전체를 신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4)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708억 8,400만원, ②지출 6,515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991억 1,500만원 ②지출 3,184억 3,2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9,7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49〉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예산총계	970,000	970,000
사업예산	870,884	651,567
자본예산	99,115	318,432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서(안)」, p.23 “2024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9,700억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9,300억원)보다 4.3%, 400억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영업외 수익**을 금년도 최종예산(193억 9,700만원)보다 △68.0%, △131억 8,700만원 감액된 6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최종예산(223억 6,500만원)보다 127.6%, 285억 3,800만원 증액된 50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50〉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970,000	930,000	40,000				4.3
상수도사업수익		870,884	868,657	2,227				0.3
영업수익		839,275	820,909	18,366				2.2
상수도사용료수익		808,760	789,532	19,227				2.4
급배수공사수익		27,298	28,100	△802				△2.9
기타영업수익		3,217	3,276	△58				△1.8
영업외수익		31,609	47,748	△16,139				△33.8
이자수익		2,575	1,503	1,071				71.3
타회계전입금수입		22,823	26,847	△4,024				△15.0
기타영업외수익		6,210	19,397	△13,187				△68.0
자본적수입		99,115	61,342	37,772				61.6
유형자산처분		8,822	8,605	217				2.5
재산매각수입		8,822	8,605	217				2.5
자본잉여금수입		20,614	20,568	46				0.2
시설분담금수입		-	19,422	△19,422				△100.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956	1,145	811				70.8
원인자부담금수입		18,658	-	18,658				순증
유보자금		69,677	32,168	37,508				116.6
순세계잉여금		50,903	22,365	28,538				127.6
미수금		18,774	9,803	8,970				91.5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서(안)」, P.31 “세입예산 목별구성”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9,700억원으로 '23년도 최종 예산(9,300억원)보다 4.3% 4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3년도 최종예산(6,376억 1,900만원)보다 1.0%, 61억 9,000만원 증액된 6,43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3년도 최종예산(2,703억 3,500만원)보다 1.0%, 25억 9,600만원 증액된 2,72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67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 하였음

〈표 2-151〉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예산안)		2023(최종예산)		증 감	
		%		%		%
계	970,000	100.0	930,000	100.0	40,000	4.3
상 수도 사업 비용	651,567	67.2	644,212	69.3	7,355	1.1
영 업 비 용	643,809	66.4	637,619	68.6	6,190	1.0
영 업 외 비 용	968	0.1	973	0.1	△5	△0.5
예 비 비 (경 상 사 업)	6,790	0.7	5,620	0.6	1,170	20.3
자 본 적 지 출	318,432	32.8	285,787	30.7	32,645	11.4
유 형 자 산 취 득	272,931	28.1	270,335	29.1	2,596	1.0
무 형 자 산 및 기 타 유 동 자 산 취 득	1,473	0.2	746	0.1	726	97.5
비 가 동 설 비 자 산 취 득	26,288	2.7	8,151	0.9	18,136	222.5
기 타 자 본 적 지 출	14,828	1.5	2,873	0.3	11,955	416.1
예 비 비 (투 자 사 업)	2,910	0.3	3,680	0.4	△770	△20.9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서(안)」 재구성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7,744억 4,200만원, ②지출 4,849억 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773억 8,000만원, ②지출 3,668억 4,8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518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52〉 202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예산총계	851,823	851,823
사업예산	774,442	484,975
자본예산	77,380	366,848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총규모는 8,518억 2,300만원으로 '23년도 최종예산액 9,137억 4,900만원보다 △6.8%, △619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최근 3년간 결산액('20~'22)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23년도 최종예산(6,775억 3,900만원)보다 1.8%, 119억 6,900만원이 증액된 6,895억 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24년도 수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아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275억 1,400만원 감액편성하고,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을 편성하지 않아 전년 대비 △430억원 감액편성 되었고, **시설분담금수입**도 '23년도 당초예산(583억 3,500만원)보다 △49억 8,900만원 감액한 53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2-153〉 202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851,823	913,749	△61,926	△6.8
	사업수익	774,442	762,044	12,398	1.6
	영업수익	740,588	727,907	12,681	1.7
	사용료수익	689,508	677,539	11,969	1.8
	기타영업수익	51,079	50,367	712	1.4
	영업외수익	33,854	34,136	△282	△0.8
	이자수익	3,651	3,500	151	4.3
	타회계전입금수입	27,704	27,380	324	1.2
	기타영업외수익	2,498	3,256	△757	△23.3
	자본적수입	77,380	151,705	△74,324	△49.0
	투자자산처분	0	43,000	△43,000	△1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0	43,000	△43,000	△100.0
	자본잉여금수입	55,878	60,063	△4,184	△7.0
	시설분담금수입	53,345	58,335	△4,989	△8.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91	147	1,044	708.1
	공사부담금수입	1,341	1,580	△238	△15.1
	유보자금	21,502	48,642	△27,140	△55.8
	순세계잉여금	0	27,514	△27,514	△100.0
	미수금	21,502	21,128	373	1.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6664('23.11.16)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24년도 지출은 8,51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9,137억 4,900만원)보다 △619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사업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5,038억 5,800만원)보다 △3.7%, △188억 8,300만원 감액된 4,849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4,098억 9,100만원)보다 △10.5%, △430억 4,200만원 감액된 3,668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54〉 202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최종예산)		증 감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계	851,823	100.0	913,749	100.0	△61,926	△6.8
사업예산	484,975	56.9	503,858	55.1	△18,883	△3.7
하수시설관리	72,660	8.5	94,411	10.3	△21,750	△23.0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184,844	21.7	183,855	20.1	989	0.5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98,122	11.5	107,916	11.8	△9,794	△9.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0,668	8.3	61,273	6.7	9,395	15.3
행정운영경비 (물재생계획과)	6,817	0.8	6,215	0.7	602	9.7
행정운영경비 (물재생시설과)	72	0.0	64	0.0	7	12.2
행정운영경비 (중량물재생센터)	16,317	1.9	15,463	1.7	854	5.5
행정운영경비 (난지물재생센터)	12,897	1.5	11,959	1.3	938	7.8
재무활동	22,074	2.6	22,000	2.4	74	0.3
예비비(사업)	500	0.1	700	0.1	△200	△28.6
자본예산	366,848	43.1	409,891	44.9	△43,042	△10.5
하수시설관리(자본)	286,798	33.7	291,655	31.9	△4,856	△1.7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65,757	7.7	57,691	6.3	8,066	14.0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8,856	1.0	15,840	1.7	△6,984	△44.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3,751	0.4	22,981	2.5	△19,230	△83.7
재무활동	1,550	0.2	21,555	2.4	△20,005	△92.8
예비비(자본)	135	0.0	167	0.0	△31	△19.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6664('23.11.16)